발 간 등 록 번 호

국 방 통 계 연 보

2015



국 방 부

공 란

2015 국방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 폐해로 인명·재산적 피해와 다른 나라를 떠도는 난민들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오히려 번영하고 있는 것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국력, 즉 강력한 국방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평소 저는 이러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국방통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국방통계이며, 궁극적으로 국방3.0의 가치와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15 국방통계연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국방통계 생산'에 중점을 두고, 군수, 시설 등 각 분야별로 체계화한 정확한 자료와 정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고 통계지표의 기초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통계해석상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간 추진해온 국방통계시스템 고도화의 구축으로 통계자료의 자유로운 융합은 물론 다차원의 통계분석 등 최신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맞춤형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통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통계연보 작성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11.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 인 호

공 란

일 러 두 기

1. 이 연보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정책, 기획, 인사, 보건복지, 동원, 정보화, 군수, 시설, 행정지원 분야의 통계자료를 종합 편집한 것으로 매 자료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였습니다.

2. 통계자료 계수 중 단위 미만의 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년도 통계연도와 일치되지 않은 것은 이 연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본 연보에서 사용된 부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해당 숫자 없음
   「···」: 해당 숫자 미상
   「 △ 」: 감 소
   「 〃 」: 위란의 내용과 같음
   「註」: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4. 이 연보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료출처부서(기관)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창조행정과(전화:02-748-6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란

목 차

제1장 정책분야

1. 안보관광지 방문인원 현황 ····· 7
2.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 ····· 8
3. 병영도서관 현황 ····· 10
4. 각종서적 병영 보급 현황 ····· 12
5. 육아휴직 현황 ····· 13
6. 군내 부부현황 ····· 14
7. 정책홍보용 뉴미디어 운영실적 ····· 15
8. 대국민 화생방 교육지원 현황 ····· 17
9.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현황 ····· 19
10.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현황 ····· 22
11. 국방 교류협력 현황 ····· 24
12. 외국군 수탁교육 현황 ····· 25
13. 해외파병 현황 ····· 28
14. 국방관련 조약 및 약정 체결 현황 ····· 30
15.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합의서 체결현황 ····· 31
16. 국군포로 송환 현황 ····· 32

제2장 기획분야

1.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 35
2. 행정정보 공개청구 공개 및 비공개 현황 ····· 37
3. 국방·군사 제안제도 운영 현황 ····· 39
4. 군인보수 현황(간부) ····· 41
5. 국방비 결산 현황 ····· 42

6. 국방부 일반회계 수입 현황 ····· 44
7. 국방부 계약 현황 ····· 46
8. 국방 자산 현황 ····· 54
9. 국방중기계획 현황 ····· 55
10. 국가별 국방비 현황 ····· 57

제3장 인사분야

1. 현역병 입영 현황 ····· 61
2. 각 군 국내·외 위탁교육 현황 ····· 62
3.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64
4. 국방 포상 현황 ····· 66
5. 2014년 사유별 휴직인원 현황 ····· 68
6. 국립묘지(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안장 현황 ····· 70
7. 태권도 유단자 현황(군간부) ····· 72
8. 과학화 훈련장 활용 현황 ····· 74
9. 국방대학교 수료 현황 ····· 77
10. 보수교육 과정별 교육인원 현황 ····· 80
11. 사관학교 모집 경쟁률 ····· 87
12.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 ····· 89
13. 군 사망사고 현황 ····· 90
14.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 92

제4장 보건복지분야

1. 군 병원 진료 현황 ····· 95
2. 현역장병 민간 병원 이용 현황 ····· 97
3. 연도별 군인연금기금 자산 현황 ····· 99

4. 군인 연금기금 운용 현황 ····· 100
5. 병사 계급별 1인당 인력운영비 ····· 102
6. 군 어린이집 현황 ····· 103

제5장 정보화분야

1. 업무용 PC 보유 현황 ····· 107
2. 각 군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현황 ····· 110

제6장 군수분야

1. 군수품 조달집행액 현황 ····· 115
2. 기본급식 기준액 ····· 117
3. 군 대민지원 현황 ····· 118
4. 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 ····· 119

제7장 시설분야

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세입·세출 현황 ····· 123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완화 현황 ····· 124
3. 군 주거시설 개선 현황 ····· 125
4. 국방 시설유지비 추이 ····· 126
5.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현황 ····· 127
6. 군사용 사·공유지 현황 ····· 128
7. 국방부소관 토지매입 현황 ····· 130
8. 국방부소관 토지 용도별 현황 ····· 132

제8장 행정 지원 분야

1. 2014년 형사사건 처리 현황 ····· 135
2. 2014년 보통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 141
3. 2014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 148
4. 2014년 군교도소 수용자 입·출소 현황 ····· 151
5. 2014년 징계처분현황 ····· 152
6. 국가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154
7. 국가배상금 신청·처리 현황 ····· 156
8. 장병 인권 교육 현황 ····· 157
9. 국방부 행정규제 개혁 현황 ····· 159
10.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 160
11. 국방민원 처리기간 준수 현황 ····· 163
12. 국방관련 집회·시위 현황 ····· 164
13.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 ····· 165
14. 전사망 민원접수 현황 ····· 166

정 책 분 야

1. 안보관광지 방문인원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문화정책과 과장(02-748-6710), 문화역사담당(02-748-6718)

1. 통계표

(단위 :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301,809	2,312,340	2,252,765	2,003,881	2,475,779	2,183,111	2,443,976	2,709,836	2,750,636	3,496,494
내국인	3,014,123	2,008,092	2,143,333	1,872,021	2,333,522	2,001,567	2,180,960	2,159,810	2,234,961	2,628,343
외국인	287,686	304,248	109,432	131,860	142,257	181,544	263,016	550,026	515,675	868,15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안보관광지 방문인원 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도별, 지역별, 대상별 안보관광지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국민 안보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안보관광지 방문인원 집계현황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안보관광지 : 6.25전적지와 민통선 일대, 연평해전지 등 전적관광자원이 있는 곳에 전후세대들의 역사(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관광지 • 군별 안보관광지 현황(군관리 23개소) - 육군(14개) : 도라전망대, 제3땅굴,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승전전망대, 제4땅굴, 을지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제2땅굴, 평화전망대, 백마고지 전적지,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육군사관학교 - 해군/해병대(7개) : 김포 애기봉 전망대, 강화도 평화전망대, 백령도 전망대, 평택안보공원, 연평도 전승기념관, 포항역사관, 해군사관학교 - 공군(2개) : 공군사관학교, 철매역사관('14년 신설)
의미해석	• '10.3.26. 천안함 피격사건 및 '10.11.23.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지자체에서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여 4년(2011~2014년) 연속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2.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문화정책과 과장(02-748-6710), 문화협력담당(02-748-6719)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80,779	90,544	59,117	52,907	84,367
부대견학	소계	46,129	64,594	39,413	30,360	63,940
	육군	17,619	16,032	11,970	11,950	21,630
	해군	25,040	33,182	20,843	14,680	18,360
	공군	3,470	15,380	6,600	3,730	23,950
병영체험	소계	16,250	21,230	7,249	8,857	6,187
	육군	10,950	19,734	3,730	4,962	3,787
	해군	4,800	996	2,745	3,260	2,220
	공군	500	500	774	635	180
전적지행군	소계	2,280	4,720	10,125	6,730	460
	육군	2,060	4,270	9,825	6,520	150
	해군	220	450	300	210	310
	공군	-	-	-	-	-
특별캠프	소계	16,120	-	2,330	6,960	13,780
	육군	15,900	-	1,200	5,830	6,400
	해군	220	-	1,050	1,050	7,100
	공군	-	-	80	80	280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8,528	43,058	45,131	47,150	44,227
부대견학	소계	14,242	25,690	25,118	31,041	24,037
	육군	970	7,300	9,698	7,471	10,007
	해군	9,834	14,790	12,390	20,620	11,620
	공군	3,438	3,600	3,030	2,950	2,410
병영체험	소계	5,178	7,930	4,770	9,124	5,880
	육군	4,675	5,260	3,590	7,979	4,990
	해군	83	1,310	700	905	605
	공군	420	1,360	480	240	285
전적지행군	소계	-	-	-	3,850	1,590
	육군	-	-	-	3,355	285
	해군	-	-	-	495	1,305
	공군	-	-	-	-	-
특별캠프	소계	9,108	9,438	15,243	3,135	12,720
	육군	5,535	9,260	15,065	2,475	12,480
	해군	2,045	90	90	420	-
	공군	1,528	88	88	240	24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도별, 군별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청소년단체, 각 군)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부대견학 : 1일 부대 방문 견학 프로그램 • 병영체험 : 초병 경계근무 체험 등 단순 부대 견학 이외의 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 전적지 행군 : 한국전쟁 당시 전적지를 따라 차량 및 도보로 행군하는 프로그램 • 특별캠프 : 상기 부대견학, 병영체험, 전적지 행군 이외의 부대방문 프로그램을 말하며, 군의 장소지원 포함 * 운영목적 :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대군신뢰 증진에 기여
의미해석	• 청소년 호국수련활동별 참여 인원수는 청소년 단체의 지원신청 인원에 따라 매년 변화하므로 참여인원수의 증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3. 병영도서관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문화정책과 과장(02-748-6710), 문화예술담당(02-748-6706)

1. 통계표

(단위 : 개소, 권)

연 도	제대별		장서 보유량별 도서관 수							총 장서량
			계	500권 이하	1,000권 이하	2,000권 이하	3,000권 이하	5,000권 이하	5,000권 초과	
2010	계		1,579	344	386	418	189	125	117	3,849,804
	육군	소계	1,258	266	308	335	164	107	78	2,705,939
		대대급 이하	1,014	220	264	270	136	83	41	1,766,537
		연대급 이상	244	46	44	65	28	24	37	939,402
	해 군		194	67	62	33	8	8	16	328,869
	공 군		100	6	15	45	11	8	15	268,724
	국 직		27	5	1	5	6	2	8	546,272
2011	계		1,785	149	189	338	204	129	776	4,922,371
	육군	소계	1,419	49	117	255	154	113	731	3,449,877
		대대급 이하	1,146	45	95	210	130	84	582	1,817,665
		연대급 이상	273	4	22	45	24	29	149	1,632,212
	해 군		209	86	49	33	19	9	13	461,080
	공 군		109	4	17	39	22	5	22	415,228
	국 직		48	10	6	11	9	2	10	596,186
2012	계		1,649	265	335	491	263	175	120	4,483,431
	육군	소계	1,326	215	276	398	214	148	75	3,294,929
		대대급 이하	1,110	197	238	349	181	115	30	1,842,977
		연대급 이상	216	18	38	49	33	33	45	1,451,952
	해 군		164	35	41	40	19	12	17	496,392
	공 군		118	7	13	46	21	11	20	455,872
	국 직		41	8	5	7	9	4	8	236,238
2013	계		1,500	219	294	461	248	167	111	4,430,212
	육군	소계	1,185	172	247	377	191	130	68	3,163,512
		대대급 이하	948	156	220	309	149	94	20	1,545,800
		연대급 이상	237	16	27	68	42	36	48	1,617,712
	해 군		161	38	29	40	25	15	14	528,735
	공 군		107	5	11	31	21	16	23	488,495
	국 직		47	4	7	13	11	6	6	249,470
2014	계		1,660	214	334	528	283	184	117	5,111,768
	육군	소계	1,303	154	266	444	224	141	74	3,557,904
		대대급 이하	1,036	122	236	365	186	103	24	1,773,788
		연대급 이상	267	32	30	79	38	38	50	1,784,116
	해 군		197	52	53	37	24	16	15	543,596
	공 군		106	-	8	35	22	22	19	450,170
	국 직		54	8	7	12	13	5	9	560,098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병영도서관 현황
작성목적 (배경)	병영도서관 예산(운영비, 도서구입비, 환경조성비 등) 지원 등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병영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병영도서관 : 육군의 대대급·해군의 함정(2급함)·공군의 대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장병들에게 정보이용·학습·조사·연구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
의미해석	• '09년부터 설치 의무화된 병영도서관에 대한 운영 예산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환경 조성 • 2012년, 2013년에는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고 형태로 운영되던 소규모 병영도서관이 대대급 병영도서관으로 통합 운영, 독서코칭과 독서동아리 활동 등 장병들의 교양증진, 정서함양 등의 자율적 독서활동 공간으로 활용

4. 각종 서적 병영 보급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문화정책과 과장(02-748-6710), 문화예술담당(02-748-6706)

1. 통계표

□ 진중문고 보급현황

(단위 : 권, 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보급권수	504,000	432,000	702,000	712,311	769,815	734,160
선정 권수	42	36	54	54	57	56
보급수량(질)	12,000	12,000	13,000	13,190	13,500	13,110

□ 정기간행물 월 보급현황

(단위 : 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 류	7	10	9	10	8	9
총 보급권수	103,855	105,970	115,070	119,040	95,000	91,599
병사용 교양지	90,625	89,500	99,600	103,300	78,000	73,999
간부용 시사안보지	13,230	16,470	15,470	15,740	17,000	17,60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각종 서적 병영 보급 현황
작성목적 (배경)	장병 독서욕구 충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각 종 도서 보급 등의 정책결정을 위함
자료출처	국방부(문화정책과)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진중문고 : 병영 내 장병들에게 보급 목적으로 선정된 도서를 시중 도서와 동일 내용으로 판형만을 축소하여 한정제작 보급하는 도서
의미해석	• 병영문화 개선 등 장병의 독서활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라 진중문고 보급 수량이 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격오지 부대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중대급 미만의 소규모 독립 부대에도 보급하고 있음 • 또한, 장병의 교양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5. 육아휴직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과장(02-748-5170), 제도발전담당(02-748-5174)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17	195	270	400	657	810	1,106	1,330 (144)	1,515 (230)	1,526 (247)
군 인	87	122	170	263	409	554	805	804 (102)	987 (178)	1,140 (170)
군 무 원	23	60	91	115	215	241	267	478 (36)	485 (50)	364 (73)
공 무 원	7	13	9	22	33	15	34	48 (6)	43 (2)	22 (4)

* 괄호안 :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육아휴직 현황
작성목적 (배경)	육아휴직 현황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인사정보체계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육아휴직 :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 자녀 1인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3항의 기간(남성군인 1년, 여성군인 3년)동안 부여하는 휴직을 말함.
의미해석	•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군내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 육아휴직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내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자도 증가하고 있음. •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유의점 ·기타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토대로 '12년부터 현황 파악

6. 군내 부부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과장(02-748-5170), 제도발전담당(02-748-5174)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계	육군	해군	해병	공군	국직
합 계	2,333	2,396	2,903	3,011	1,551	344	88	539	489
여 군	1,756	1,714	2,077	2,168 (2,144)	1,288 (1,278)	198 (190)	78 (77)	313 (310)	291 (289)
여군무원	577	682	826	843 (400)	263 (155)	146 (69)	10 (2)	226 (73)	198 (101)

* 괄호안 : 부부군인(여군-남군), 부부군무원(여군무원-남군무원) 현황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내 부부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내 부부 현황을 파악하여 상시 동일지역 근무 가능·신혼기간 동거 보장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자료출처	국군재정관리단 수당처리과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군내부부 : 부부군인/군무원 포함 부부가 모두 국방 공무원(군인, 군무원, 공무원)인 경우 • 여 군 : 군인,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과 결혼한 여군 • 여군무원 : 군인,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과 결혼한 여군무원 • 부부군인 : 부부가 모두 군인인 경우 • 부부군무원 : 부부가 모두 군무원인 경우
의미해석	• 군내 부부 현황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군내 부부 중 부부군인의 비율은 71%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군무원의 비율은 13.2%로 낮게 나타났음.

7. 정책홍보용 뉴미디어 운영실적

작성부서 :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02-748-5521), 온라인분석담당(02-748-5533)

1. 통계표

(단위 : 개,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홈페이지 방문자 수		267,340,613	130,649,917	29,970,894	25,844,558	35,274,944
트위터	개설 수	2	4	6	6	5
	팔로워 수	9,872	20,540	53,750	74,739	79,497
블로그	개설 수	8	7	7	7	6
	방문자 수	4,828,853	4,126,093	5,727,338	7,702,622	7,414,860
페이스북	개설 수	-	3	5	6	6
	친구 수	-	15,927	52,476	133,540	534,290
유튜브	개설 수	2	5	6	6	6
	조회 수	84,014	990,200	8,634,194	15,460,879	12,002,461
카카오 스토리	개설 수	-	-	-	3	4
	구독자 수	-	-	-	56,318	165,669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정책홍보용 뉴미디어 운영실적
작성목적 (배경)	국방정책 홍보를 실시하는 국방 관련 기관의 뉴미디어 현황과 운영실적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 각 군,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뉴미디어(홈페이지, SNS 등) 운영실적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뉴미디어 : 과거 전통 매체(신문, 방송 등)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의미
의미해석	• 홈페이지의 경우, '14년 공군 홈페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1~4월까지 방문자가 제외되었음. 임병장 총기사고, 윤일병 폭행사건 등으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3년 대비 방문자 수가 상승함. - '10년 :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사이버분향소 방문으로 방문자 수가 급증 - '11년 : 천안함 전사자 1주기 추모를 위한 분향소 방문으로 증가세 유지 • 블로그의 경우, 국방부가 정책블로그 'N.A.R.A.'를 '동고동락'으로 통폐합하여 9월부터 블로그 개설수가 7개에서 6개로 운영 • 페이스북의 경우, 페이스북 서비스의 전체 성장세와 함께 각 군 페이스북의 공감대를 높이는 활발한 소통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임. 카카오스토리도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활발한 구독자 수 상승 추이를 보임. • 국방홍보원은 '14년 트위터 운영을 중단하고 카카오스토리를 신설하여 운영함
유의점 ·기타	• 각 미디어 별 현황은 6개 기관(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사령부, 국방홍보원)의 자료로 한정 • 카카오스토리는 기존 '조회 수'를 '구독자 수'로 변경함

8. 대국민 화생방 교육지원 현황

작성부서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교육훈련과장(02-2008-6330),
민방위교육지원장교(02-2008-6333)

1. 통계표

(단위 : 명, 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계	3,237	30	3,389	31	3,538	33	7,617	53	1,632	15	6,164	35	3,290	15
국립방재교육원	32	1	30	1	29	1	39	1	28	1				
중앙119구조단	30	1	28	1	30	1	30	1	20	1			140	1
서울메트로	1,150	6	1,200	6	1,180	6	1,002	5			750	3		
서울시청	125	3	120	3	138	3	124	1						
경찰교육원					114	1	633	10	204	4	360	8	215	1
성남시청	1,900	19	2,011	20	2,047	21	2,244	27						
서초구청							3,360	6						
수원시청									1,100	6	2,891	12		
안산시청													1,261	6
환경부							157	1						
농수산식품부									220	1				
서울지방경찰청							28	1	60	2			120	1
경기도청											1,040	8	373	3
청양군청											500	2		
국방부											500	1	121	1
국정원											123	1	60	1
서울시어린이													1,000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대국민 화생방 교육지원 현황
작성목적 (배경)	화생방 위협에 대하여 경각심 고취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민방위 대원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화생방 대응능력 향상업무에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 대국민 화생방 교육지원 결과 보고('14. 12월) • '14년 국방기관 성과평가서 보고('14. 12월)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대국민 화생방 교육 • 주로 정부기관 공무원, 민방위 대원, 관련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화생방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요령을 교육 하는 것과 • 기타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거나 협조하여 기회교육으로 지원
의미해석	• '08~'10년까지는 제한된 기관 위주 교육지원 및 협조체계유지 • '11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화생방 관련 이슈화에 따른 교육 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평년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 • '12년은 지원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부 정부기관 교육대상 추가 • '13년은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포함하여 교육지원 • '14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타 연도와 비교하여 교육대상 및 횟수가 감소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교육기회가 감소되었음. • 기관별 교육대상자 및 현황 - 국립방재교육원 : 전국 시도 민방위 담당공무원 교육, 연 1회 -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대원 교육, 연 1회 - 경찰청·경찰교육원 : 경찰초급지휘관 / 대테러 전문요원 교육, 수시 - 각 시·군·구청 : 민방위대원 교육, 수시 - 환경부 등 정부 부처 : 공무원(직원) 교육, 연 1회 -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 공무원 교육, 연 1 ~ 2회 - 서울메트로 : 직원 및 민방위대원 교육, 수시 - 어린이 : 서울시 어린이, 요청 시
유의점 ·기타	이 교육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교육이 아니며, 국민과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 등에게 화생방 상황에서의 방호요령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임.

9.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현황

작성부서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기술정보과 과장(02-2008-6220),
기술분석장교(02-2008-6221)

1. 통계표

□ 참가자 직무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38	24	22	21	28	26	26	27	19	20	25
장차관(급)	2	0	0	0	0	1	1	0	0	0	0
의료분야 전문가	9	1	0	2	0	0	3	2	1	0	0
산업분야 전문가	9	0	1	1	0	2	2	1	1	0	1
소방관련 전문가	26	5	4	1	4	0	1	3	4	0	4
정부행정 전문가	52	10	7	7	0	9	1	6	2	6	4
경찰분야 전문가	20	1	4	0	8	1	1	0	0	3	2
재난분야 전문가	16	0	1	1	4	2	4	1	1	0	2
교육분야 전문가	4	0	0	1	0	2	1	0	0	0	0
국제협력 전문가	25	0	0	1	5	2	6	1	3	5	2
군화생방 전문가	45	5	4	5	7	4	1	7	3	5	4
관련연구 전문가	23	2	1	2	0	3	3	6	2	0	4
기타분야 전문가	7	0	0	0	0	0	2	0	2	1	2

□ 참가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38	24	22	21	28	26	26	27	19	20	25
네팔	1				1						
그루지아	1			1							
라오스	1								1		
러시아	1				1						
레바논	5							2	2		1
말레이시아	8	1	1	1	2	1	1				1
몽골리아	10		1	3	1	1	2			2	
몰디브	1				1						
미국	1				1						
미얀마	2				2						
바레인	2							1	1		
방글라데시	7		1	1	1		1	1	1		1
베트남	6	1			1		1	1	1		1
부탄	1		1								
브루나이	2		2								
사모아	2				1		1				
사우디아라비아	3		1					1	1		
스리랑카	8				1	2	1	2	1		1
싱가폴	4			2			1	1			
아랍에미레이트	3	3									
아르메니아	2	1		1							
아제르바이잔	2				2						
아프카니스탄	3									2	1
예멘	5					1	1	1		1	1
오만	4		1					1	1	1	
요르단	8		1		1	1	1	1	1	1	1
우즈베키스탄	10	1	1	3		2	2			1	
우크라이나	2					1		1			
이란	8		1	1	1	2	2			1	
인도	8	1	1	1	1			1	1		2
인도네시아	10	3	1	2		1	1			2	
이라크	4							1	1	1	1
중국	8		1		1	1	1	1	2		1
카자흐스탄	2					1					1
카타르	5				1		1	1	1		1
캄보디아	7					1		2	2		2
키르키스탄	1	1									
키리바시	1						1				
쿡아일랜드	1				1						
타지키스탄	3	1					1	1			
태국	1	1									
터키	1					1					
파키스탄	9	3	1			1		1	1	1	1
팔라우	2	1			1						
피지	7					2	1	1	1	1	1
필리핀	9	1	2		1		1			2	2
한국	46	5	5	5	5	7	5	5	1	4	4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현황
작성목적 (배경)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현황을 활용하여 국제협약 이행과 군사·외교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시 활용
자료출처	'14년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결과('15. 6월)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OPCW : Organization Proliferation of Chemical Weapon의 약자로 '화학무기 금지기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 국제화학방호교육 : OPCW와 협조하여 국군화생방사가 화학전시의 방호와 화학테러 대응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시아권 회원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5일간(약 40H) 교육과 관련 체험을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임.
의미해석	• OPCW와 협조하여 국방부 WMD대응과가 지원하고 국군화생방사가 개최하는 아시아권 유일의 교육으로 국가 외교적 협력관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 대상자 신분은 정부행정, 경찰분야, 군 화생방 전문가 순으로 참여자가 많음. * 참가국 참여빈도로는 인도와 요르단이 8회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가 7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몽골리아, 피지가 6회로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음. • 표의 현황은 연도별 참가국이 10개국 ~ 22개국이고, 내국인 포함 20 ~ 3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냄. * 교육의 지속성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OPCW로부터 인정받아 '15년도에는 기본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승격되어 교육실시

10. 주한미군 병력 및 방위비분담금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미국정책과 과장(02-748-6330), SCM 운영담당(02-748-6336),
한미안보협력담당(02-748-6338)

1. 통계표

(단위 : 명,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29,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분담금 합의액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주한미군 병력 및 방위비분담금 현황
작성목적 (배경)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인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와 방위비분담금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업무 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방위비분담금 :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총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담 • 합의액 :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금액으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합의 금액
의미해석	[주한미군병력] • '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28,500명에 대한 현 수준 유지에 합의하고 '12년 11월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공약을 재확인, '06년 이후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유지 [방위비분담금] • '05~'06년 (제6차 협정) : '05년 총액 6,804억 원에 합의, 기간 내 인상률 동결, '05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원화로 지급

구 분	내 용
의미해석	• '07～'08년 (제7차 협정) : '07년 총액 7,255억 원에 합의, '08년 분담금 총액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하여 결정 • '09～'13년 (제8차 협정) : '09년 총액 7,600억원에 합의,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 (인상률 상한선 4% 적용) 하여 결정 • '14～'18년 (제9차 협정) : '14년 총액 9,200억원에 합의,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 (인상률 상한선 4% 적용) 하여 결정
유의점 ·기타	• '91년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SOFA에 의한 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였음. SOFA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 제1항 : 미국은 한국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 '91년 이후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과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을 체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음. •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주한미군 사령부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 등) 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11. 국방 교류협력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제정책과 과장(02-748-6310), 국제정책총괄담당(02-748-6311)

1. 통계표

(단위 : 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장관 국방외교활동	9	8	11	10	14	14	17	12	18	26
軍지도급 상호방문	23	29	25	37	39	35	24	28	29	23
국방정례회의	13	11	14	15	10	14	14	13	25	28
외국군 대표단 국방정책설명회	8	7	3	6	7	4	5	5	11	1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 교류협력 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도별 국방 교류협력 현황을 파악 유지하여 국방외교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방외교활동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기관 국방 교류협력 현황)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장관 국방외교활동 : 연간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주요인사 또는 상대국 방문 시 주요 인사와의 대담 횟수 기록(다자협력회의 포함) • 군지도급 상호방문 : 장·차관 국방외교활동을 제외한 군지도급 인사의 상호 교류현황 횟수 기록 * 군 지도급 인사 : 장관,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 국방정례회의 : 실장 및 국장급 정례회의 * 국제정책관실 : 차관보급 전략대화(실장), 국방정책실무회의(국장) * 군수관리관실 : 군수협력회의(국장) * 정보화기획관실 : 정보통신기술(ICT)회의(실·국장급) • 외국군 대표단 국방정책설명회의 : 방한하는 외국군 대표단에 대한 정책설명회 실시 횟수 기록
의미해석	• 연도별 국방교류협력 횟수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국내·외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도별 협력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비교 분석의 의미는 없음.
유의점 ·기타	• 국방외교 다변화와 세계 모든 국가와의 국방교류 협력 추진을 감안하여 전체 교류협력 횟수를 제시하였음. * 교류 횟수 합계는 현황 성격이 서로 달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12. 외국군 수탁교육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과장(02-748-5180),
인적자원개발정책담당(02-748-5182)

1. 통계표

□ 총 괄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3	49	48	76	85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7	9	10	8	11
	석사과정	-	-	-	-	-
	합참대	-	-	-	-	-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12	16	7	14	16
	해군대학	8	6	9	9	10
	공군대학	9	6	6	10	9
육군사관학교		2	4	4	5	6
해군사관학교		2	3	4	4	5
공군사관학교		2	5	4	5	6
국군 간호 사관학교		-	-	-	-	-
병과학교		-	-	2	16	16
한국어과정		1	-	2	5	6

□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3	49	48	76	85
나이지리아			1	2	1
대만	2				
말레이시아	1	1	1	3	2
멕시코					1
몽골	4	5	6	5	6
미국	7	4	4	1	7
방글라데시		2	2	2	2
베네수엘라		1			2
베트남	3	3	6	5	5
브라질	1			1	1
아랍에미리트	1			4	7
알제리				1	
에콰도르			1		
요르단	2	1	1		
우즈베키스탄	2	2		2	2
우크라이나	2	1	1	1	1
이라크				4	4
이집트				5	1
인 도		1	1		
인도네시아	3	4	4	5	13
일 본	3	5	5	6	5
중국				3	3
카자흐스탄	2	3	2	2	2
캄보디아		1		1	1
캐나다	1	1	1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콜롬비아	1		1		1
태국	3	4	3	14	4
터키	3	4	3	3	4
투르크메니스탄				3	3
파키스탄	1	3	1	1	1
페루	1	1	2	1	1
프랑스		1			
필리핀		1	2	1	4
호주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외국군 수탁교육 현황
작성목적 (배경)	우리 군사교육기관 전체 또는 교육기관별 수탁교육 규모와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와 차후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외국군 수탁생 : 우리나라 군 교육기관에 파견된 외국군 장교와 사관생도
의미해석	• 외국군 수탁교육은 한국의 국방외교와 방산협력을 지원하고, 외국군과의 인적 유대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외국군 수탁생에 대한 교육은 점진적으로 인원이 확대되어 왔으며 '12. 7월 외국군 수탁교육 확대 계획에 따라 '13년부터 국가와 인원이 크게 증가 •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 등 지역적 편중이 강한 편이며 유럽 국가는 수탁교육 실적이 낮은 편임.

13. 해외파병 현황

작성부서 : 합참 해외파병과 과장(02-748-3940), 다국적군작전지원담당(02-748-3948)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계	6,834	5,718	2,729	1,823	1,667
	개인	69	70	62	69	67
	부대	6,765	5,648	2,667	1,754	1,600
UN PKO	소계	69	29	389	728	741
	개인	29	29	30	38	41
	부대	40	0	359	690	700
다국적군	소계	6,765	5,689	2,340	1,095	926
	개인	40	41	32	31	26
	부대	6,725	5,648	2,308	1,064	900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계	2,621	1,448	904	1,692	1,094
	개인	75	47	40	39	41
	부대	2,546	1,401	864	1,653	1,053
UN PKO	소계	1,227	631	379	630	634
	개인	41	32	31	30	28
	부대	1,186	599	348	600	606
다국적군	소계	1,394	667	375	383	307
	개인	34	15	9	9	8
	부대	1,360	652	366	374	299
국방교류협력	소계	-	150	150	679	153
	개인	-	0	0	0	5
	부대	-	150	150	679	148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해외파병 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도별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합참 해외파병과 해외파병현황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UN PKO(United Nation Peace Keeping Operation : 유엔 평화유지활동) :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서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선거 지원 등 분쟁 확산방지와 평화정착을 돕기 위한 활동 • 다국적군 : 특정목적을 위하여 동맹이나 연합형태로 2개 국가 이상의 군으로 결성되어 평화유지를 추진하는 활동 • 국방교류협력 : 국가 간 협력과 우호증진, 재난구호 등의 목적을 가진 활동
의미해석	• 2014년 해외파병 현황은 전년 대비 600여 명이 감소함. 이는 다국적군 파병부대인 오쉬노부대(67명)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지원 및 PRT방호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6월에 철수하였으며, 국방교류협력 파병 부대인 아라우부대(최초 529명 파병)가 필리핀에서 1년간 태풍 피해복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12월에 철수하였기 때문임. • UN PKO 개인파병인원 중 2009년 11월 최초 파병되었던 아이티 안정화 지원단 한국군의 임무가 종료되어 2014년 12월부로 2명이 철수하였음. • 다국적군 개인파병 중 바레인의 연합해군사 참모장교는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소함. 참모직 중 한 자리를 호주와 6개월씩 교대로 파병중임. •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교류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에볼라 긴급구호대를 편성하여 '14년 12월 시에라리온에 파병함. 軍 의료진(군의관·간호장교) 5명과 민간의료진들로 통합 구성된 최초의 民·官·軍합동파병으로서 1개 팀별 임무기간은 3주(사전 교육 및 귀국 후 격리기간 제외)로 총 3개 팀을 2015년 3월까지 파병함.
유의점 ·기타	• 통계자료별 작성 기준일자에 따라 파병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파병부대별 편제조정 및 파병장병 교대기간 공석 등의 이유로 총 인원에 대한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4. 국방관련 조약·약정체결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제정책과 과장(02-748-6310), 군사조약담당(02-748-6314)

1. 통계표

(단위 : 건수)

정 부	계	미국	아시아 및 중동	서유럽	동유럽	기타
제1,2공화국 (1948-1961)	3	3	-	-	-	-
제3,4공화국 (1962-1979)	96	87	3	6	-	-
제5공화국 (1980-1987)	154	141	7	5	-	1
제6공화국 (1988-1992)	270	242	5	19	4	-
문민정부 (1993-1997)	311	263	19	12	13	4
국민의 정부 (1998-2002)	151	113	13	11	5	9
참여 정부 (2003-2007)	160	102	30	14	3	11
이명박 정부 (2008-2012)	238	108	51	29	16	34
박근혜 정부 (2013-2014)	82	50	12	10	2	8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관련 조약·약정체결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이 체결주체가 되거나 업무소관부서가 되어 체결한 국방관련 조약과 기관간 약정의 체결현황을 공개하고 조약관련 업무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제출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조약 : 국가(정부)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하는 문서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기관간 약정 : 정부기관이 소관업무 또는 권한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한 상호 이해나 협의를 기록한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의미해석	• 국력 신장에 따라 3,4공화국부터 국방 관련 국제 약정의 체결 건수가 증가하였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가장 많은 체결건수를 기록함.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지역과의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 약정체결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체결도 꾸준히 이루어져(60%, 총 82건 중 50건)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의 기틀을 공고히 함.

15.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합의서 체결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북한정책과 과장(02-748-6250), 군사회담기획담당(02-748-6494)

1. 통계표

□ 남북군사회담 개최

(단위 : 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	3	4	11	2	-	1	1	-	-	1
국방장관회담	-	-	-	1	-	-	-	-	-	-	-
고위군사당국자회담	-	-	-	-	-	-	-	-	-	-	1
장성급군사회담	2	-	2	3	-	-	-	-	-	-	-
군사실무회담	3	3	2	7	2	-	1	1	-	-	-

□ 남북군사회담 합의서 체결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의서 수	2	-	-	5	-	-	-	-	-	-	-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합의서 체결현황
작성목적 (배경)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합의서 체결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군사회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
자료출처	「남북군사회담 자료집」('13. 7), 「통일부 남북회담 합의서집」('08. 1)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방장관회담 : 최고위급 군사회담으로 추진원칙과 방향 등 기본틀 제시 • 장성급 군사회담 : 서해상 우발 충돌방지 문제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관련사항 협의 • 군사 실무회담 :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지원·보장조치 관련 협의
의미해석	<2004년 이후 남북군사회담 총 28회 개최> • 2004~2007년(23) : 「6.4합의」(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이행관련 군사회담(장관, 장군, 대령급) 다수 개최 • 2008~2014년(5)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연평도 도발 관련 군사실무회담(대령급) 개최를 통해 쌍방입장 교환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개최된 군사회담에서 총 7건의 합의서 체결> • 2004년에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합의서 체결(2건) • 2007년에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및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체결(5건)

16. 국군포로 송환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군비통제과 과장 (02-748-6240), 국군포로 정착지원담당 (02-748-6245)

1. 통계표

(단위 : 명)

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80	1	1	4	2	9	6	6	5	14

(단위 :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4
11	7	4	6	3	1	-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군포로 송환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본책무로 인식하고, 이들이 조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포로 송환 정책에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 (군비통제과, 국군포로 송환 현황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군포로 :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이나 임무수행 중 적국, 억류국 등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
의미해석	•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임. • 국군포로 송환은 1994년 조창호 중위 귀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4년 14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 획 분 야

1.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창조행정담당관(02-748-6530), 행정정보공개담당(02-748-6539)

1. 통계표

□ 청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타기관이송	취 하	민원이첩	기 타
2005	692	483	55	88	-	59	7	-
2006	581	330	36	102	47	45	21	-
2007	823	370	104	203	44	67	14	21
2008	916	447	107	194	28	88	3	49
2009	768	383	109	149	29	62	3	33
2010	949	394	132	229	58	92	7	37
2011	922	387	160	200	45	64	27	39
2012	1,045	446	148	161	44	79	60	107
2013	1,231	550	156	137	46	150	66	126
2014	1,419	572	176	149	74	203	35	210

□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05	692	54	30	4	604
2006	581	30	13	13	525
2007	823	72	43	3	705
2008	916	77	52	6	781
2009	768	40	53	1	674
2010	949	76	45	6	822
2011	922	69	40	12	801
2012	1,045	47	24	5	969
2013	1,231	49	46	7	1,129
2014	1,419	111	54	13	1,24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작성목적 (배경)	정보공개 청구처리현황을 조사하여 수요자 맞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정보공개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전부공개 : 요청한 문서(정보) 전체를 제공 • 부분공개 : 비공개할 내용을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만 제공 • 비 공 개 : 정보공개법 9조1항1호 ~ 8호에 해당하는 정보 • 민원이첩 :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닌 진정, 질의, 제안 등에 대해 일반 민원으로 전환 처리하는 업무
의미해석	• 청구 및 처리현황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년 이후 비공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청구방법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방법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약 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행정정보 공개청구 공개 및 비공개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창조행정담당관(02-748-6530), 행정정보공개담당(02-748-6539)

1. 통계표

□ 공개형태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공개건수 (공개율:%)	공개형태별 현황				공개 처리방법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2005	538(77.7)	42	79	398	19	33	224	3	278
2006	366(63.0)	23	90	251	2	30	92	3	241
2007	474(57.7)	49	161	259	5	45	157	9	263
2008	554(60.5)	27	229	296	2	25	235	2	292
2009	492(64.1)	29	184	273	6	26	202	3	261
2010	526(55.4)	32	203	278	13	34	225	2	265
2011	547(59.3)	26	221	293	7	35	193	10	309
2012	594(56.8)	17	171	402	4	43	156	5	390
2013	706(83.7)	29	229	444	4	46	213	9	438
2014	748(83.4)	23	204	518	3	45	165	8	530

□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 익 침 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 판 관 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당등 (제5호)	개 인 사생활 침 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자 료 미존재
2005	88	14	10	1	-	12	10	1	-	40
2006	102	38	9	-	3	4	5	3	-	40
2007	203	89	15	-	5	6	7	-	2	79
2008	194	90	18	-	6	11	7	3	-	59
2009	149	40	20	1	4	9	18	5	-	52
2010	229	79	23	2	-	8	18	4	-	95
2011	200	36	20	4	13	11	27	3	1	85
2012	161	43	40	-	17	19	30	9	3	-
2013	137	46	27	-	10	29	16	7	2	-
2014	149	63	31	2	9	9	30	2	3	-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행정정보 공개청구 공개 및 비공개 현황
작성목적 (배경)	정보공개 청구처리현황을 조사하여 수요자 맞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정보공개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의미해석	• 공개형태별 현황 : 공개형태는 정보공개시스템(전자파일)을 통한 공개비율이 '14년의 경우 69.3%(518건)로 가장 높으며, 사본 출력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구인 또한 27.3%(204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개율 = (전부공개 + 부분공개)/(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100 • 비공개 사유별 현황 : 비공개 사유는 '14년의 경우 제1호(법령상 비밀·비공개로 규정)가 42.3%(14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유의점 ·기타	• 공개율은 정보공개 처리대상이 아닌 민원이첩, 취하, 타 기관 이송건은 제외한 결과임.

3. 국방·군사 제안제도 운영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창조행정담당관(02-748-6530), 제안관리담당(02-748-6536)

1. 통계표

□ 제안 접수건수 및 우수제안 채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제안서 접수 건수	우수제안으로 채택 건수	우수제안 채택율(%)
2005	70	36	51.4
2006	78	32	41.0
2007	71	34	47.9
2008	70	36	51.4
2009	86	40	46.5
2010	104	42	40.4
2011	99	26	26.3
2012	90	30	33.3
2013	81	30	37.0
2014	77	30	39.0

□ 국방부 채택 우수제안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일반행정·제도분야	지상장비 분 야	해상장비 분 야	항공장비 분 야	통신·전자·유도무기분야
2005	36	2	4	3	15	12
2006	32	-	4	8	7	13
2007	34	1	10	4	11	8
2008	36	-	12	7	10	7
2009	40	3	12	11	12	2
2010	42	6	7	9	12	8
2011	26	1	3	8	9	5
2012	30	1	11	8	8	2
2013	30	4	6	9	5	6
2014	30	4	4	8	10	4

□ 국방부 채택 우수제안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직/기타기관 등
2005	36	5	10	18	3
2006	32	6	12	14	-
2007	34	14	7	11	2
2008	36	15	9	12	-
2009	40	16	12	7	5
2010	42	14	11	13	4
2011	26	5	11	10	-
2012	30	10	8	10	2
2013	30	9	11	7	3
2014	30	8	10	9	3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군사 제안제도 운영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군사 분야 제안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제안의 정책반영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자료출처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창조행정과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제안 :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국민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 국방·군사제안 : 군에서 운영·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기타 유형적 물체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군사 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개선과 관련된 제안 • 국방부 채택 중앙우수제안 : 공무원제안은 행자부에서 중앙우수제안을 채택하여 포상하고 있으나, 국방·군사 분야는 공무원제안규정 특례에 따라 국방부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포상하는 중앙우수제안
의미해석	• 2014년 제안 접수는 조직개편에 따른 육군본부의 상반기 우수제안 추천이 없어 전년 대비 접수 건수 소폭 감소하였음. • 2014년도 중앙우수제안 중 항공장비분야가 33.3%(10건)를 차지, 5가지 분야 중 채택제안이 가장 많았음.
유의점 ·기타	• 본 지표는 국방 · 군사 분야 중앙우수제안에 국한된 자료임. • 각 기관별 제안 운용 현황은 제외되었음.

4. 군인보수 현황(간부)

작성부서 :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0), 인건비담당(02-748-5335)

1. 통계표

(단위 : 천원)

계 급	2011	2012	2013	2014	2015
대 장	119,094	123,042	126,356	128,436	133,212
중 장	112,567	116,447	119,702	121,745	126,434
소 장	98,381	102,334	105,731	107,714	112,246
준 장	92,273	93,110	96,251	98,074	102,238
대 령	89,432	92,988	96,022	97,812	101,903
중 령	78,920	82,079	84,774	86,362	89,990
소 령	60,810	63,199	65,255	66,464	69,206
대 위	41,434	43,492	44,894	45,701	47,549
중 위	25,118	26,436	27,338	27,859	29,050
소 위	22,901	24,202	25,020	25,493	26,572
준 위	65,513	69,892	72,294	73,684	76,882
원 사	63,055	65,503	68,497	70,937	73,870
상 사	48,896	51,773	54,269	55,246	57,440
중 사	34,378	36,896	38,620	39,276	40,764
하 사	20,274	20,658	21,370	22,877	23,849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인보수 현황(간부)
작성목적 (배경)	간부들의 보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15년 예산편성내역)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2일('15년 예산 국회 확정일)
용어설명	• 군인보수 : 기본급, 일반수당, 특수업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금액
의미해석	• 매년 보수인상으로 인하여 군인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군인 보수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증가율 1.9% 보다 상회함.

5. 국방비 결산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02-748-5350), 결산담당(02-748-5359)

1. 통계표

(단위 : 억 원, 명목가치)

연 도	세출 예산액	전년 이월액	이체	예비비	이/전용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 이월액	불용액
2005	211,026	6,357	0	839	6,526 △6,526	218,222	210,494 (96.5)	7,018	710
2006	225,129	7,018	60,037	966	22,519 △22,519	173,076	167,925 (97.0)	4,405	746
2007	178,165	4,405	0	0	1,931 △1,931	182,570	174,999 (95.9)	5,519	2,052
2008	189,677	5,519	0	0	2,721 △2,721	195,196	187,689 (96.2)	6,486	1,022
2009	202,663	6,486	0	360	1,628 △1,628	209,509	201,233 (96.0)	6,354	1,922
2010	204,597	6,354	0	691	2,597 △2,597	211,642	203,404 (96.1)	7,554	684
2011	217,096	7,554	0	1,629	4,816 △4,816	226,279	218,457 (96.5)	6,984	839
2012	230,638	6,984	0	1,181	3,840 △3,840	238,803	229,710 (96.2)	7,370	1,722
2013	243,221	7,370	0	0	2,923 △2,923	250,591	240,742 (96.1)	5,018	4,831
2014	251,960	5,018	0	0	1,960 △1,960	256,978	248,357 (96.6)	3,570	5,051

* 방위력 개선비를 제외한 전력운영비이며, 명목가치를 산정한 것임.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비 결산현황
작성목적 (배경)	당해 연도 국방예산의 집행액,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집행의 적절성·효과성을 파악하고, 다음연도 국방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세출예산현액 : 예산결정 후 증감액을 가감하여 실제 지출대상이 되는 한도액 • 지출액 : 회계연도 편성예산의 실제 지출된 세출액 • 이용액 : 분야(장)·부문(관)·프로그램(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서로 조정하여 충당된 금액 • 전용액 : 단위사업(세항) 및 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서로 조정하여 충당된 금액 • 이월액 :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동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 불용액 : 세출예산 중 지출이 필요 없는 금액 • 집행률 : (지출액/세출예산현액)×100
의미해석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5조 1,960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액 24조 3,221억 원에 비해 8,739억 원이 증가(3.6%)하였음.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18억 원을 합한 25조 6,978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에 비해 6,387억 원(2.5%)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24조 8,357억 원으로 전년대비 7,615억 원(3.2%) 증가하였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6%로 다소 증가하였음. • 이·전용액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의 0.8%인 1,96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63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공공요금 부족 등에 기인함. • 이월액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의 1.4%인 3,57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48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시설건설사업의 공사기간 부족과 외자구매 장비 및 물자 조달기간 장기 소요, 방위비분담금 한·미간 결산시기 상이 등임. • 불용액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의 2.0%인 5,05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집행 잔액이 증가하였음.

6. 국방부 일반회계수입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02-748-5360), 국고담당(02-748-5364)

1. 통계표

□ 총 괄

(단위 : 백만 원, %, 명목가치)

예 산 과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24,629	40,074	37,661	55,580	75,337	96,938	126,464	178,015	129,722	224,329
(증가율)	(66.4)	(-67.8)	(-6.0)	(47.6)	(35.6)	(28.7)	(30.5)	(40.8)	(-27.1)	(73)
○ 재산수입	3,459	3,201	3,872	5,373	7,021	7,690	7,631	4,872	7,291	12,393
(점유율)	(2.8)	(8.0)	(10.3)	(9.7)	(9.3)	(7.9)	(6.0)	(2.7)	(4.1)	(6)
·토지 대여료	2,125	1,989	2,219	2,634	4,039	4,523	4,380	2,234	3,523	7,767
·건물 대여료	833	765	996	1,007	800	1,188	1,126	803	1,343	1,056
·기타 관유물대여료	283	210	300	1,118	994	537	755	680	690	2,407
·기타 재산수입	218	237	357	614	1,188	1,442	1,370	1,154	1,735	1,163
○ 경상이전수입	108,816	24,045	20,883	33,238	45,374	64,820	72,057	135,339	83,612	91,558
(점유율)	(87.3)	(60.0)	(55.4)	(59.8)	(60.2)	(66.9)	(57.0)	(76.0)	(47.0)	(41)
·벌금	3,008	2,596	2,927	2,682	2,404	2,613	2,738	3,470	4,049	4,266
·몰수금	170	63	203	31	114	102	29	200	33	20
·변상금	2,143	2,837	1,418	1,460	1,575	803	2,436	1,166	1,656	1,855
·위약금	52,351	6,915	4,168	6,422	9,085	7,729	12,258	11,045	20,452	12,946
·가산금	-22	60	59	17	16	39	10	24	236	24
·기타경상이전수입	51,166	11,574	12,108	22,626	32,180	53,534	54,586	119,435	57,185	72,447
○ 재화/용역판매수입	12,354	12,828	12,906	16,969	22,942	23,063	32,431	37,508	38,557	32,326
(점유율)	(9.9)	(32.0)	(34.3)	(30.5)	(30.5)	(23.8)	(25.6)	(21.1)	(21.7)	(14)
·병원 수입	4,125	4,849	5,553	5,997	6,887	7,322	7,150	8,258	9,062	9,574
·면허료 및 수수료	275	193	387	349	400	412	472	434	500	425
·항공 항만 수입	-	-	-	-	-	-	-	-	0	683
·기타 잡수입	7,954	7,786	6,966	10,623	15,655	15,329	24,809	28,817	28,995	21,650
○ 관유물 매각대	-	-	-	-	-	1,365	14,345	296	261	0
(점유율)	-	-	-	-	-	(1.4)	(11.3)	(0.2)	(0.1)	(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기금전입금										88,046
(점유율)										(39)

□ 정부 대비 국방부 수입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 부	1,364,592	1,478,668	1,711,721	1,815,858	2,049,475	2,612,194	2,148,604	2,237,034	2,324,000	2,392,256
국방부	1,246	401	377	556	753	969	1,265	1,780	1,297	2,243
비율(%)	0.09	0.03	0.02	0.03	0.04	0.04	0.06	0.08	0.06	0.09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일반회계수입 현황
작성목적 (배경)	당해 연도 국방부 일반회계수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국방부 세입 예산 편성에 반영
자료출처	국방부(국방부본부/각 군 및 국직기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일반회계수입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충당하며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
의미해석	• 국방부 일반회계 수입은 발생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세외수입으로서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도 정부 수입 중 국방부 점유율은 0.09% 수준이며, 국방부 수입 2,243억원 중 경상이전수입이 916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방부 수입이 증감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10년도는 PKO경비보전금 등 경상이전수입 증가(194억 원) - 2011년도는 불용품매각대금 증가 등으로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증가(94억 원) - 2012년도는 PKO경비보전금, FMS반환금 등 경상이전수입 크게 증가(633억 원) - 2013년도는 PKO경비보전금, FMS반환금 등 경상이전수입 크게 감소(△579억 원) - 2014년도는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증가와 기금전입금 발생으로 수입 증가(946억 원)

7. 국방부 계약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재정회계(02-748-5360), 계약관리담당(02-748-5367)

1. 통계표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08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계약 유형	계약 방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11,715	17,769	5,434	9,802	2,624	2,992	1,980	2,634	1,677	2,342
	경쟁 계약	5,117	11,591	2,459	5,042	1,309	2,522	620	2,040	729	1,987
	수의 계약	6,598	6,178	2,975	4,760	1,315	470	1,360	594	948	354
공사	소계	3,907	7,858	2,600	3,321	573	1,887	365	1,655	369	995
	경쟁 계약	1,966	7,269	1,213	2,949	319	1,778	172	1,575	262	968
	수의 계약	1,941	589	1,387	373	254	109	193	80	107	26
물품	소계	5,958	6,813	2,009	4,547	1,725	898	1,312	748	912	620
	경쟁 계약	2,437	2,824	864	1,395	885	621	365	380	323	429
	수의 계약	3,521	3,989	1,145	3,152	840	278	947	368	589	191
용역	소계	1,850	3,098	825	1,933	326	206	303	232	396	727
	경쟁 계약	714	1,497	382	698	105	123	83	86	144	590
	수의 계약	1,136	1,601	443	1,235	221	83	220	146	252	137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09									
계약 유형	계약 방법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21,067	29,670	12,024	21,962	3,530	2,888	2,724	3,063	2,789	1,757
	경쟁 계약	5,316	21,939	3,123	16,260	771	2,361	749	2,316	673	1,003
	수의 계약	15,751	7,731	8,901	5,702	2,759	528	1,975	747	2,116	755
공사	소계	8,843	18,835	6,751	14,754	679	1,830	816	1,627	597	624
	경쟁 계약	2,015	16,669	1,328	13,183	270	1,698	249	1,391	168	397
	수의 계약	6,828	2,166	5,423	1,571	409	132	567	237	429	227
물품	소계	10,019	8,291	4,254	5,550	2,437	892	1,519	1,143	1,809	706
	경쟁 계약	2,743	4,257	1,483	2,543	421	552	423	821	416	342
	수의 계약	7,276	4,034	2,771	3,007	2,016	340	1,096	323	1,393	364
용역	소계	2,205	2,544	1,019	1,658	414	166	389	292	383	428
	경쟁 계약	558	1,013	312	534	80	110	77	105	89	264
	수의 계약	1,647	1,531	707	1,123	334	55	312	188	294	164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0									
계약 유형	계약 방법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28,422	21,563	12,210	12,044	6,330	3,016	5,471	3,328	4,411	3,174
	경쟁 계약	7,698	12,988	3,244	6,624	1,978	2,144	951	2,321	1,525	1,899
	수의 계약	20,724	8,575	8,966	5,420	4,352	872	4,520	1,006	2,886	1,276
공사	소계	8,378	8,441	5,756	4,416	783	1,348	984	1,584	855	1,093
	경쟁 계약	1,754	6,485	1,013	3,142	273	1,120	271	1,296	197	926
	수의 계약	6,624	1,956	4,743	1,274	510	227	713	288	658	167
물품	소계	16,942	10,616	5,154	6,896	4,879	1,402	3,879	1,251	3,030	1,068
	경쟁 계약	5,320	5,524	1,947	3,158	1,605	855	544	825	1,224	685
	수의 계약	11,622	5,093	3,207	3,737	3,274	547	3,335	426	1,806	383
용역	소계	3,102	2,505	1,300	733	668	266	608	493	526	1,013
	경쟁 계약	624	979	284	323	100	168	136	200	104	287
	수의 계약	2,478	1,526	1,016	409	568	98	472	293	422	726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1									
계약 유형	계약 방법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36,107	26,847	15,605	13,444	6,396	3,935	8,711	4,420	5,395	5,048
	경쟁 계약	9,975	14,888	4,271	5,555	2,690	3,038	1,244	3,014	1,770	3,282
	수의 계약	26,132	11,958	11,334	7,889	3,706	898	7,467	1,406	3,625	1,766
공사	소계	9,327	10,144	6,497	3,189	708	1,963	1,243	2,491	879	2,502
	경쟁 계약	1,826	7,539	898	1,899	315	1,702	399	2,167	214	1,771
	수의 계약	7,501	2,606	5,599	1,289	393	262	844	324	665	731
물품	소계	23,114	13,792	7,518	9,424	4,999	1,671	6,742	1,362	3,855	1,336
	경쟁 계약	7,380	5,888	3,056	3,246	2,256	1,153	688	607	1,380	883
	수의 계약	15,734	7,904	4,462	6,178	2,743	518	6,054	755	2,475	454
용역	소계	3,666	2,910	1,590	832	689	301	726	567	661	1,210
	경쟁 계약	769	1,462	317	410	119	183	157	240	176	629
	수의 계약	2,897	1,448	1,273	422	570	118	569	327	485	581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2									
계약 유형	계약 방법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41,599	34,166	17,031	15,786	7,340	4,747	9,927	3,614	7,301	10,020
	경쟁 계약	11,382	18,759	4,235	6,135	3,402	3,252	802	1,809	2,943	7,562
	수의 계약	30,217	15,408	12,796	9,651	3,938	1,495	9,125	1,805	4,358	2,457
공사	소계	10,378	12,819	7,253	4,307	747	1,899	1,201	1,705	1,177	4,908
	경쟁 계약	2,079	10,556	1,074	2,727	301	1,747	312	1,400	392	4,682
	수의 계약	8,299	2,264	6,179	1,580	446	151	889	305	785	226
물품	소계	26,874	14,742	7,904	8,331	5,742	1,869	8,012	1,181	5,216	3,361
	경쟁 계약	8,474	6,456	2,807	3,121	2,950	1,308	392	268	2,325	1,760
	수의 계약	18,400	8,286	5,097	5,210	2,792	561	7,620	914	2,891	1,601
용역	소계	4,347	6,605	1,874	3,148	851	979	714	728	908	1,750
	경쟁 계약	829	1,747	354	287	151	198	98	142	226	1,121
	수의 계약	3,518	4,859	1,520	2,861	700	782	616	586	682	630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3									
계약 유형	계약 방법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47,905	46,990	19,115	20,439	7,445	5,283	13,052	4,397	8,293	16,870
	경쟁 계약	12,482	30,041	4,844	9,633	3,115	3,530	916	2,225	3,607	14,654
	수의 계약	35,423	16,948	14,271	10,806	4,330	1,753	12,136	2,173	4,686	2,217
공사	소계	11,894	18,990	7,974	4,556	807	1,171	1,533	2,054	1,580	11,209
	경쟁 계약	2,565	16,394	1,160	2,852	287	954	382	1,687	736	10,901
	수의 계약	9,329	2,596	6,814	1,705	520	217	1,151	367	844	308
물품	소계	30,317	19,656	8,938	11,709	5,651	2,989	10,325	1,720	5,403	3,238
	경쟁 계약	8,607	11,437	3,161	6,293	2,627	2,324	372	323	2,447	2,496
	수의 계약	21,710	8,219	5,777	5,415	3,024	665	9,953	1,397	2,956	742
용역	소계	5,694	8,344	2,203	4,174	987	1,123	1,194	623	1,310	2,423
	경쟁 계약	1,310	2,211	523	488	201	252	162	214	424	1,256
	수의 계약	4,384	6,133	1,680	3,686	786	871	1,032	409	886	1,167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4									
계약 유형	계약 방법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국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49,462	45,365	20,455	18,596	7,189	6,822	12,738	4,173	9,080	15,774
	경쟁 계약	12,496	26,416	5,031	7,656	2,701	4,208	900	1,638	3,864	12,914
	수의 계약	36,966	18,950	15,424	10,941	4,488	2,613	11,838	2,535	5,216	2,860
공사	소계	12,338	17,040	8,435	4,750	748	876	1,387	1,756	1,768	9,659
	경쟁 계약	2,503	13,419	1,137	3,034	238	698	355	1,134	773	8,553
	수의 계약	9,835	3,621	7,298	1,715	510	178	1,032	622	995	1,106
물품	소계	31,206	20,205	9,697	10,622	5,485	4,158	10,111	1,812	5,913	3,612
	경쟁 계약	8,708	10,342	3,392	4,117	2,286	3,274	396	306	2,634	2,645
	수의 계약	22,498	9,862	6,305	6,505	3,199	884	9,715	1,506	3,279	967
용역	소계	5,918	8,121	2,323	3,224	956	1,788	1,240	605	1,399	2,503
	경쟁 계약	1,285	2,655	502	504	177	237	149	198	457	1,716
	수의 계약	4,633	5,466	1,821	2,720	779	1,551	1,091	407	942	787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계약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국직(소속기관 포함) 및 각 군별 계약현황을 계약목적물(물품, 공사, 용역)과 계약방법(경쟁계약, 수의계약)으로 구분·파악하여 계약 업무에 활용
자료출처	재정정보 분석시스템(DW)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경쟁계약 :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 • 국방부・국직 :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의미해석	• 국방계약 건수는 '08년 11,715건에서 '14년 49,462건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였으며, 계약금액은 '08년 17,769억원에서 '14년 45,365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하였음. • 특히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공정성·투명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조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등의 증가로 수의계약 건수는 '08년 6,598건에서 '14년 36,966건으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유의점 ·기타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나,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므로 경쟁계약과 동일하게 공정성·투명성의 효과를 발생시킴. • 이 자료는 재정정보 분석시스템에 의해 '08년부터 작성되었음.

8. 국방자산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02-748-5350), 재무결산담당(02-748-5372)

1. 통계표

(단위 :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계	1,500,499	1,583,947	1,647,462	1,711,475
시설자산	689,438	731,188	764,367	787,459
물 품	697,866	754,336	774,487	810,192
기타자산	113,195	98,423	108,608	113,824

* 국방자산 현황은 2011년도부터 작성·관리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자산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자산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시설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의 장부가액(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 물 품 :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장부가액(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 기타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일반 유형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의 장부가액 토지
의미해석	• 2014년도 국방자산은 171조 1,475억 원으로 2013년도 국방자산 164조 7,462억 원에 비해 3.9% 증가하였음.

9. 국방중기계획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02-748-5310), 중기사업총괄담당(02-748-5313)

1. 통계표

□ 2013~2017 국방중기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도 예산	대상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금 액	329,576	353,857	374,674	395,546	422,810	448,946	1,995,832
	증가율		7.4	5.9	5.6	6.9	6.2	6.4
전력운영 분야	금 액	230,638	243,910	257,113	270,138	284,255	299,286	1,354,701
	증가율		5.8	5.4	5.1	5.2	5.3	5.3
방위력 개선분야	금 액	98,938	109,947	117,561	125,408	138,555	149,660	641,131
	증가율		11.1	6.9	6.7	10.5	8.0	8.6

□ 2014~2018 국방중기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도 예산	대상기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금 액	344,970	370,304	398,918	428,897	459,262	487,590	2,144,971
	증가율		7.3	7.7	7.5	7.1	6.2	7.2
전력운영 분야	금 액	243,221	258,573	272,890	288,093	304,866	319,049	1,443,471
	증가율		6.3	5.5	5.6	5.8	4.7	5.6
방위력 개선분야	금 액	101,749	111,731	126,028	140,804	154,396	168,541	701,500
	증가율		9.8	12.8	11.7	9.7	9.2	10.6

□ 2015~2019 국방중기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	대상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계	금 액	357,056	385,350	415,214	446,197	475,972	505,845	2,228,577
	증가율		7.9	7.8	7.4	6.7	6.3	7.2
전력운영 분야	금 액	251,960	267,852	284,203	300,906	316,152	331,641	1,500,753
	증가율		6.3	6.1	5.9	5.1	4.9	5.6
방위력 개선분야	금 액	105,096	117,498	131,011	145,291	159,820	174,204	727,824
	증가율		11.8	11.5	10.9	10.0	9.0	10.6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중기계획 현황
작성목적 (배경)	중기계획은 현존 및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단년도 예산편성시 중기계획을 근거로 여건 변화,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재원 규모와 사업내역 등을 조정해 편성함.
자료출처	국방부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방중기계획 :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 • 전력운영비 : 인건비, 급식·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연구개발비용
의미해석	• 2013~2017 국방중기계획 - 국방비 일반회계 총액은 2013~2017 중기기간 연평균 증가율 6.4% 수준 *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5.3%,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8.6% 수준 • 2014~2018 국방중기계획 - 국방비 일반회계 총액은 2014~2018 중기기간 연평균 증가율 7.2% 수준 *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5.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6% 수준 • 2015~2019 국방중기계획 - 국방비 일반회계 총액은 2015~2019 중기기간 연평균 증가율 7.2% 수준 *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5.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6% 수준
유의점 ·기타	•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재가로 확정 • '15 ~ '19 국방중기계획까지는 전력운영분야는 국방부, 방위력개선분야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 * '16 ~ '20 국방중기계획부터는 국방부에서 통합하여 작성

10. 국가별 국방비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02-748-5310), 재정정책담당(02-748-5324)

1. 통계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한국	206	2.3	236	2.3	264	2.4	290	2.4	223	2.5
미국	4,953	4.0	5,218	3.9	5,526	4.0	6,963	4.9	6,610	4.7
일본	439	1.0	411	1.0	410	0.9	460	0.9	511	1.0
러시아	188	1.2	246	1.4	322	1.5	405	2.4	383	3.1
중국	298	1.3	352	1.3	462	1.4	602	1.4	704	1.5
영국	517	2.3	599	2.5	633	2.3	608	2.3	591	2.7
프랑스	531	2.5	543	2.4	607	2.3	672	2.4	544	2.1
사우디	254	8.2	295	8.4	354	9.4	382	8.2	413	11.0
이스라엘	98	8.0	116	8.3	116	7.2	148	7.4	135	6.9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국방비 (억$)	GDP 대비 (%)
한국	257	2.3	273	2.4	293	2.39	315	2.42	344	2.38
미국	6,909	4.8	6,870	4.6	6,450	3.99	5,780	3.45	5,810	3.34
일본	544	1.0	598	1.0	591	0.99	487	0.95	477	0.90
러시아	419	4.4	516	2.8	588	2.91	661	3.15	700	3.40
중국	764	1.3	902	1.2	1,026	1.25	1,158	1.28	1,294	1.30
영국	603	2.7	600	2.5	613	2.51	581	2.40	618	2.47
프랑스	520	2.0	535	1.9	503	1.93	523	1.91	531	1.90
사우디	452	10.1	485	8.1	567	7.73	670	8.95	808	10.38
이스라엘	152	7.0	152	6.2	169	6.55	187	6.43	201	6.6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가별 국방비 현황
작성목적 (배경)	세계 주요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수준을 파악하고,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국방예산 편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英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6~2015, 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방비 : 해당연도 국방비 지출규모 • GDP 대비 :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
의미해석	• 인근 동북아 지역 국가나, 우리나라와 분쟁의 수준이 유사한 국가와의 국방비 규모 비교 시,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GDP대비 국방비는 낮은 수준임.
유의점 ·기타	• 한국 국방비는 편성환율 기준 환산액 • The Military Balance는 매년 3년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달러 환율 차이 발생으로 종전 자료가 변동됨.(최근 발행 자료로 최신화) * '15년 발행 자료('12~'14)의 '12~'13년 통계치와 '14년 발행 자료('11~'13)의 '12~'13년 통계치간 일부 차이 발생

인 사 분 야

1. 현역병 입영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02-748-5130), 병무정책담당(02-748-5138)

1. 통계표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현역자원	291,094	316,210	333,847	329,751	333,227
계획인원(A)	274,126	285,212	273,886	257,923	271,836
입영인원(B)	268,764	281,969	274,324	256,171	274,292
입영비율 (B/A)	98.0	98.9	100.2	99.3	100.9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현역병 입영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의 충원(입영)율을 분석, 향후 입영예측 판단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병무청 징병검사·입영 현황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현역자원 : 징병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 계획인원 : 군에서 충원을 필요로 하는 현역 인원 • 입영인원 :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지원(모집)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간 인원 ※입영 후 귀가한 인원은 제외함. • 입영비율 : 계획인원 대비 실제 입영한 인원의 비율
의미해석	• 2010년 이후 입영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병역자원의 수, 군의 현역소요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점 ·기타	• 현역병 입영현황은 징집과 모집에 의하여 입영한 인원임.

2. 각 군 국내·외 위탁교육 현황

자료출처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과장(02-748-5180), 전문학위 교육담당(02-748-5186)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직무향상교육	
		국내 (주간)	국내 (야간)	국외 (주간)	국방 대학교	지휘참모 대학	병과 학교	사관 학교	국내 연수	국외 연수
2010	계	200	5,309	57	11	46	196	9	9,840	159
	육 군	111	2,019	42	4	23	88	5	4,448	46
	해 군	45	1,625	6	3	12	52	1	1,301	43
	공 군	44	1,665	9	4	11	56	3	1,724	25
	국 직	-	-	-	-	-	-	-	2,367	45
2011	계	235	5,305	65	11	44	203	9	8,061	178
	육 군	124	2,299	44	4	20	91	3	3,470	41
	해 군	48	1,543	8	4	11	57	3	783	40
	공 군	63	1,463	13	3	13	55	3	1,422	29
	국 직	-	-	-	-	-	-	-	2,386	68
2012	계	227	5,590	57	10	47	216	10	8,931	143
	육 군	120	2,915	39	4	20	99	4	5,193	40
	해 군	45	1,207	8	2	14	60	3	890	34
	공 군	62	1,468	10	4	13	57	3	998	23
	국 직	-	-	-	-	-	-	-	1,850	46
2013	계	184	4,987	44	10	51	248	9	12,089	155
	육 군	96	2,771	29	3	21	115	3	5,466	44
	해 군	40	995	8	5	15	71	3	937	38
	공 군	48	1,221	7	2	15	62	3	4,106	37
	국 직	-	-	-	-	-	-	-	1,580	36
2014	계	189	4,908	48	9	50	238	9	12,128	142
	육 군	98	2,910	30	3	21	113	3	4,455	42
	해 군	43	912	7	4	16	64	3	902	31
	공 군	48	1,086	11	2	13	61	3	4,786	34
	국 직	-	-	-	-	-	-	-	1,985	35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각 군 국내·외 위탁교육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 및 기관별 국·내외 위탁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위탁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기관 위탁교육 실적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학위교육 :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의 "전문학위교육"과 "능력계발교육"을 의미 • 전문학위교육 : 통계표의 '국내(주간)'와 '국외(주간)'를 의미. 고급학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국내·외 석·박사 과정 및 어학 등 전문분야 학사학위 과정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 능력계발교육 : 통계표의 '국내(야간)'을 의미. 군 간부의 직무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야간대학(원), 사이버 대학 과정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 국외군사교육 : 선진 및 다양한 국가의 군사지식/기술 습득, 국가별 지역 전문가 양성, 군사외교 대상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군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및 사관학교 과정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 직무향상교육 : 통계표의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를 의미. 직무 관련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의미해석	• 전문학위교육(주간학위)은 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300여 명 이내에서 위탁생을 선발, 관리하고 있음. • 능력계발교육(야간학위)은 간부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 야간대학(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므로 학습 여건을 고려하여 인원을 선발함. • 국외군사교육은 선진 다양한 군사지식 습득을 통한 군 간부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국방외교 확대에 따른 군사교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었으나 '14년부터 인원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파견을 추진 중임. • 직무향상교육은 정보기술 및 장비가 첨단화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성 높은 교육특성과 비교적 짧은 교육기간이 반영되어 인원이 가장 많음.
유의점 ·기타	• 교육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3.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과장(02-748-5180), 군 자격정책 담당(02-748-5188)

1. 통계표

(단위 : 명)

신분	자격증 종류	2010				2011				2012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산업기사	1,697	494	351	852	1,350	442	285	623	1,196	381	241	574
	기능사	13,074	7,462	2,910	2,702	14,960	8,764	2,681	3,515	16,709	9,726	3,521	3,462
장교	산업기사	130	68	22	40	109	71	14	24	83	46	5	32
	기능사	948	627	154	167	1,299	778	171	350	1,179	720	188	271
부사관	산업기사	864	95	238	531	687	92	213	382	591	95	178	318
	기능사	3,120	1,205	947	968	3,454	1,503	759	1,192	3,549	1,657	866	1,026
군무원	산업기사	156	56	53	47	152	73	40	39	113	58	22	33
	기능사	630	419	111	100	814	524	134	156	821	512	148	161
병	산업기사	547	275	38	234	402	206	18	178	409	182	36	191
	기능사	8,376	5,211	1,698	1,467	9,393	5,959	1,617	1,817	11,160	6,837	2,319	2,004

신분	자격증 종류	2013				2014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산업기사	1,191	359	209	623	1,121	385	149	587
	기능사	17,100	9,828	3,513	3,759	18,322	10,631	4,082	3,609
장교	산업기사	84	46	13	25	90	44	9	37
	기능사	1,239	754	180	305	1,105	679	162	264
부사관	산업기사	551	69	143	339	491	62	100	329
	기능사	3,330	1,629	815	886	3,206	1,658	776	772
군무원	산업기사	111	52	24	35	75	32	16	27
	기능사	774	403	160	211	723	377	129	217
병	산업기사	445	192	29	224	465	247	24	194
	기능사	11,757	7,042	2,358	2,357	13,288	7,917	3,015	2,356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작성목적 (배경)	육·해·공군의 신분별 자격증 취득 현황을 파악하여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전역 후 취업지원 등 생산적 군복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자격취득실적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군 국가기술자격 : 우수·숙련 기능 인력을 확보하여 군 전투력 향상과 장병의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전역 후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국방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노동부로부터 검정을 위탁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의미해석	• 산업기사 취득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기능사 취득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신분별 자격취득 현황을 보면, 병의 자격취득이 가장 활발하고 부사관, 장교, 군무원 순으로 보이고 있음.

4. 국방 포상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 과장(02-748-5160), 상훈담당(02-748-5155)

1. 통계표

(단위 : 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7,019	5,927	6,471	6,886	7,300	7,229	6,583	6,973	6,628	7,152
훈장	계		1,303	1,038	1,689	2,177	2,403	2,377	1,829	2,152	1,532	2,035
	무공훈장	소계	4	3	4	-	6	49	15	39	14	11
		태극	1	-	-	-	-	-	1	-		5
		을지	-	-	-	-	-	-	3	-		-
		충무	1	1	1	-	1	1	1	15	3	4
		화랑	1	1	1	-	2	48	6	24	11	2
		인헌	1	1	2	-	3	-	4	-		-
	보국훈장	소계	1,297	1,035	1,683	2,174	2,397	2,328	1,813	2,112	1,517	2,023
		통일	8	4	7	18	7	10	10	10	7	3
		국선	8	8	6	15	7	16	7	15	13	13
		천수	77	66	77	90	84	86	79	82	85	95
		삼일	276	289	368	473	389	476	377	406	404	471
		광복	928	668	1,225	1,578	1,910	1,740	1,340	1,599	1,008	1,441
	기타훈장		2	-	2	3	-	-	1	1	1	1
포장	소계		687	439	705	725	884	547	492	432	421	451
	무공		-	-	-	-	-	-	13	-		-
	보국		681	434	700	720	880	543	475	429	418	448
	예비군		6	5	5	5	4	4	4	3	3	3
	기타포장		-	-	-	-	-	-	-	-		-
표창	소계		4,738	4,151	3,752	3,639	3,760	3,913	3,955	4,098	4,227	4,151
	대통령		726	549	507	485	444	485	442	509	437	450
	국무총리		606	403	523	396	398	439	394	440	379	384
	국방부장관		3,406	3,199	2,722	2,758	2,918	2,989	3,119	3,149	3,411	3,317
장관감사장			48	45	69	82	61	162	76	48	157	215
우등상	소계		243	254	256	263	192	230	231	243	291	300
	대통령		19	22	22	24	22	21	23	22	25	25
	국무총리		15	14	14	14	14	13	15	14	16	16
	국방부장관		209	218	220	225	156	196	193	207	250	259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 포상 현황
작성목적 (배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집행실적을 파악하여 다음년도 포상 계획 수립 시 규모 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 포상관련 자료 및 행자부 포상결정통보 문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포상 : 국방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자(부대, 기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우등상, 장관감사장으로 구분 • 훈장 및 포장 ○ 훈장 :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훈격의 포상 - 무공훈장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5등급) - 보국훈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5등급) ○ 포장 :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의 포상 - 무공포장 :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보국포장 :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 - 예비군포장 :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자에게 수여 • 표창, 우등상, 장관감사장 ○ 표창 :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는 포상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국방부장관)으로 나뉨 ○ 우등상 : 교육, 경기,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주는 포상으로 대통령상장, 국무총리상장,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상장(국방부장관)으로 나뉨 ○ 장관감사장 :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국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
의미해석	• 훈·포장은 2014년은 퇴직인원 증가로 인해 보국훈장이 증가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 영향 등으로 퇴직포상 증가(약 500명) * 전체 훈·포장의 92.4%, 표창의 4.7%가 퇴직자 정부포상임 • 장관표창은 2014년은 대규모 행사가 없었고, 수시표창 통제 강화로 인해 인원이 감소함 • 장관감사장은 정례 협조상 운영 등으로 인원이 증가함
유의점 ·기타	• 타 부처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인원은 제외

5. 2014년 사유별 휴직인원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과장(02-748-5110), 인사관리/제도담당(02-748-5127)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계	육아/불임휴직	기소휴직	기타휴직	소계	육아/불임휴직	기소휴직	기타휴직	소계	육아/불임휴직	기소휴직	기타휴직	소계	육아/불임휴직	기소휴직	기타휴직	소계	육아/불임휴직	기소휴직	기타휴직
합 계		2,667	2,284	237	146	2,061	1,748	198	115	291	253	27	11	249	228	10	11	66	55	2	9
장교	소계	949	851	84	14	772	691	68	13	80	71	9	-	74	68	6	-	23	21	1	1
	대장																				
	중장																				
	소장	1		1		1		1													
	준장																				
	대령	4		4		3		3		1		1									
	중령	31	20	11		11	2	9		2	1	1		1		1		17	17		
	소령	152	133	13	6	120	103	11	6	13	12	1		17	16	1		2	2		
	대위	645	615	23	7	535	510	19	6	55	52	3		51	51			4	2	1	1
	중위	99	77	21	1	89	71	17	1	7	5	2		3	1	2					
	소위	10	2	8		9	1	8		1	1										
	준위	7	4	3		4	4			1		1		2		2					
부사관	소계	1,194	1,027	153	14	947	808	130	9	123	104	18	1	88	84	4		36	31	1	4
	원사	6		6		5		5						1		1					
	상사	188	151	36	1	169	141	27	1	10	4	6		8	5	3		1	1		
	중사	729	672	47	10	585	536	41	8	69	63	6		57	57			18	16		2
	하사	271	204	64	3	188	131	57		44	37	6	1	22	22			17	14	1	2
군무원	소계	524	406		118	342	249		93	88	78	-	10	87	76		11	7	3		4
	1급																				
	2급																				
	3급	1			1	1			1												
	4급																				
	5급	15	2		13	11			11	2			2	2	2			-			
	6급	41	21		20	18	8		10	7	3		4	15	10		5	1			1
	7급	169	129		40	97	65		32	40	36		4	30	27		3	2	1		1
	8급	218	183		35	156	124		32	32	32			28	26		2	2	1		1
	9급	79	70		9	59	52		7	7	7			11	10		1	2	1		1
	10급	1	1											1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2014년 사유별 휴직인원 현황
작성목적 (배경)	휴직사유별 공석발생 추이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안정적 인력운영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함.
자료출처	각 군 자료 종합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육아/불임휴직 :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휴직한 인원 • 기소휴직 :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 휴직한 인원 • 기타휴직 :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 이외 제48조의 각항·각호의 기타 사유로 휴직한 인원
의미해석	• 군인·군무원의 휴직 중 육아·불임휴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직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대책 강구가 필요함.
유의점 ·기타	•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 현황은 제외됨.

6. 국립묘지(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안장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팀장(02-748-5250), 보훈관리담당(02-748-5258)

1. 통계표

□ 국립현충원

(단위 : 기)

구분 \ 연도		계	20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계	134,440	83,877	3,634	4,865	4,228	4,493	5,628	4,798	4,935	6,207	5,326	6,449
	서울	62,933	54,419	3	484	428	568	893	747	899	1,369	1,342	1,781
	대전	71,507	29,458	3,631	4,381	3,800	3,925	4,735	4,051	4,036	4,838	3,984	4,668
국가 원수	소계	4	2	-	1	-	-	1	-	-	-	-	-
	서울	3	2	-	-	-	-	1	-	-	-	-	-
	대전	1	-	-	1	-	-	-	-	-	-	-	
애국 지사	소계	3,522	1,862	94	214	270	279	215	155	136	131	78	88
	서울	294	224	2	4	15	7	10	-	3	11	8	10
	대전	3,228	1,638	92	210	255	272	205	155	133	120	70	78
국가 유공자 (국가 사회 공헌자)	소계	99	75	-	4	3	2	-	7	2	1	3	2
	서울	68	62	-	1	-	-	-	-	2	1	2	-
	대전	31	13	-	3	3	2	-	7	-	-	1	2
군인. 군무원	소계	124,970	78,630	3,341	4,322	3,703	3,957	5,086	4,416	4,591	5,809	5,036	6,079
	서울	61,436	53,320	-	459	398	538	826	712	867	1,309	1,293	1,714
	대전	63,534	25,310	3,341	3,863	3,305	3,419	4,260	3,704	3,724	4,500	3,743	4,365
경 찰	소계	5,650	3,255	194	315	234	233	314	200	196	255	199	255
	서울	1,111	809	1	18	13	22	53	30	26	46	38	55
	대전	4,539	2,446	193	297	221	211	261	170	170	209	161	200
일 반 인	소계	195	53	5	9	18	22	12	20	10	11	10	25
	서울	21	2	-	2	2	1	3	5	1	2	1	2
	대전	174	51	5	7	16	21	9	15	9	9	9	23

* 자료출처 : 대전현충원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 위패 현황 제외

□ 국립호국원

(단위 : 기)

구 분	계	20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8,336	8,592	4,092	5,314	5,415	9,287	8,922	8,165	8,484	10,401	8,792	10,872
이 천	35,544	-	-	-	-	4,284	4,738	4,340	4,455	5,610	5,278	6,839
임 실	19,262	1,959	1,092	1,602	1,655	1,638	2,030	1,889	2,023	2,480	1,324	1,570
영 천	33,530	6,633	3,000	3,712	3,760	3,365	2,154	1,936	2,006	2,311	2,190	2,463

*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에서 자료 제공, 위패 현황 제외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립묘지(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안장현황
작성목적 (배경)	현재 국립묘지 안장추세 등을 파악하여 국립묘지정책에 활용하고 국립묘지별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호국원)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립현충원 : 서울・대전 등 2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울은 국방부 소관, 대전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안장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항1호에서 정함. ＊안장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20년 이상 군복무자 등 • 국립호국원 : 이천·임실·영천·산청 등 4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안장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항4호에서 정함. ＊안장대상 : 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 안장 :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행위 • 국가사회공헌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일반인 및 외국인도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안장 가능
의미해석	• 국립현충원 - 서울현충원은 대부분의 묘역이 만장되어 안장을 하지 못하다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 국립묘지의 위상에 맞는 봉안시설인 충혼당을 건립하여 ’06. 3. 1.부터 안장하고 있음. ＊묘역별 만장 연도 : 장군(’96), 장교(’86), 사병(’82) - ’09년, ’12년, ’14년은 윤달이 든 해로서 다른 해보다 안장(이장) 증가율이 높음. • 국립호국원 - 수도권의 안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08년 이천호국원을 개원함에 따라 안장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국립호국원도 윤달이 든 ’09년, ’12년, ’14년에는 안장(이장) 증가율이 높았으며, 향후 6・25참전자의 고령화(평균연령 83세)로 국립호국원 안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점 ·기타	• 산청호국원은 ’15. 4월 개원함에 따라 ’14년 통계에 미포함

7. 태권도 유단자 현황(군 간부)

작성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 과장(02-748-5160), 체육정책담당(02-748-5157)

1. 통계표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인원	-	-	-	-	-
	비율	-	-	-	-	-
육 군	인원	-	-	-	-	-
	비율	-	-	-	-	-
해 군	인원	4,201	4,417	4,296	4,611	4,438
	비율	10.1	12.7	10.2	14.1	12.7
공 군	인원	-	-	10,233	10,328	10,821
	비율	-	-	38.87	38.52	37.14
해병대	인원	4,201	4,207	4,296	4,611	4,828
	비율	79.6	79.7	81.1	81.4	76.2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인원	76,847	76,585	82,647	82,465	92,947
	비율	44.6	45.1	49.3	49.1	53.71
육 군	인원	57,738	57,890	63,853	63,125	74,316
	비율	56.7	56.8	62.7	62	63.8
해 군	인원	4,465	4,430	4,650	4,682	4,087
	비율	12.7	12.7	14	14.1	17.1
공 군	인원	10,106	9,715	9,524	10,121	10,286
	비율	34.16	35.83	35.66	37.34	37.94
해병대	인원	4,538	4,550	4,620	4,537	4,258
	비율	77.4	77.9	78.4	77.8	76.4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 태권도 유단자 현황(군 간부)
작성목적 (배경)	• 각 군별 간부들의 태권도 유단자율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태권도 업무지침'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 국방부(각 군 / 군 간부 태권도 유단자 현황 보고)
작성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의미해석	• 부대 임무 / 특성에 따라 유단자 보유율 현격한 격차 발생
유의점 ·기타	• 비율은 해당군 간부 총원 대비 유단자 수에 대한 백분율 • 육군('05～'09), 공군('05～'06)은 해당기간 자료 미 보유

8. 과학화 훈련장 활용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과장(02-748-6720), 부대훈련담당(02-748-6727)

1. 통계표

(단위 : 회, 명)

구 분	2005				2006			
	훈련 횟수	인원 수			훈련 횟수	인원 수		
		장교	부사관	병		장교	부사관	병
계	6	330	548	4,624	17	894	1,584	11,977
1군사	4	232	354	3,062	8	433	696	5,760
2작사	-	-	-	-	-	-	-	-
3군사	2	98	194	1,562	8	414	774	5,582
기타					1	47	114	635

(단위 : 회, 명)

구 분	2007				2008			
	훈련 횟수	인원 수			훈련 횟수	인원 수		
		장교	부사관	병		장교	부사관	병
계	20	1,344	1,620	12,282	24	2,154	1,681	12,758
1군사	7	386	635	5,284	8	433	696	5,760
2작사	-	-	-	-	-	-	-	-
3군사	9	463	871	6,363	9	463	871	6,363
기타	4	495	114	635	7	1,258	114	635

(단위 : 회, 명)

구 분	2009				2010			
	훈련 횟수	인원 수			훈련 횟수	인원 수		
		장교	부사관	병		장교	부사관	병
계	23	2,897	1,472	11,279	20	1,796	1,746	12,242
1군사	7	377	601	4,975	8	423	691	5,846
2작사	-	-	-	-	-	-	-	-
3군사	8	403	746	5,609	7	417	760	5,671
기타	8	2,117	125	695	5	956	295	725

(단위 : 회, 명)

구 분	2011				2012			
	훈련 횟수	인원 수			훈련 횟수	인원 수		
		장교	부사관	병		장교	부사관	병
계	22	2,850	1,730	12,359	21	2,641	1,736	11,254
1군사	7	376	618	5,236	7	379	701	5,043
2작사	-	-	-	-	-	-	-	-
3군사	8	404	688	5,784	8	401	781	5,546
기타	7	2,070	424	1,339	6	1,861	254	665

(단위 : 회, 명)

구 분	2013			
	훈련횟수	인원 수		
		장교	부사관	병
계	8	714	1,358	10,416
1군사	8	714	1,358	10,416
2작사	-	-	-	-
3군사	-	-	-	-
기타	-	-	-	-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과학화훈련장 활용현황
작성목적 (배경)	과학화훈련장에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한 부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전투형 강군 육성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육군본부 / 해병대 사령부)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과학화훈련장 : 첨단 과학화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전문 대항군을 통해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며, 전투결과에 대해 사후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전과 가장 유사한 상황으로 실지형에 조성된 훈련장 •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군내 유일 과학화훈련장으로 마일즈 장비와 실 지형 훈련시설과 중계소·이동기지국을 갖추고 있으며, '05년부터 '12년까지 152개 대대규모 약 13만여 명을 훈련하였으며, '13 ~ '16년까지 훈련장 확장공사 후 '16년 하반기부터는 여단급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의미해석	• 훈련부대는 육군 예하 상비사단과 특전사, 각 군 사관학교 및 해병대 등으로 부대 전술훈련 실시·평가 • 육군의 경우 전방 상비사단(1, 3군 예하) 예하 보병 대대급 훈련을 주로 실시하나 '11년부터는 기계화보병대대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였음. • '13년에는 훈련장 확장공사 착수 전에 1군사 예하의 몇 개 부대만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4 ~ '16년 상반기까지는 훈련장 확장공사로 훈련장 활용이 일시 중단된 상태임. • 또한 과학화훈련장은 군 구조 관련된 전투실험 지원과 연·대대장 보직 전 체험훈련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안보병영체험 일환으로 연 평균 120여회에 걸쳐 관공서, 학교와 외국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학화훈련 관찰·체험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유의점 ·기타	• '13년부터 '16년 상반기 까지 기존 대대급 훈련장을 여단급 훈련장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6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훈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확장공사로 인해 14년 이후 훈련실적 없음.

9. 국방대학교 수료 현황

작성부서 : 국방대 교수부 학사지원과 과장(02-300-2220), 학적담당(02-300-2223)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학위과정	박사	계		-	-	-	-	-
		육군		-	-	-	-	-
		해군		-	-	-	-	-
		공군		-	-	-	-	-
		해병대		-	-	-	-	-
		일반	소계	-	-	-	-	-
			공무원	-	-	-	-	-
			군무원	-	-	-	-	-
			민간인	-	-	-	-	-
	석사	계		211	230	239	221	234
		육군		109	114	111	111	111
		해군		42	42	48	43	52
		공군		45	56	54	51	52
		해병대		0	5	5	3	4
		일반	소계	15	13	21	13	15
			공무원	11	12	14	5	12
			군무원	4	1	5	6	3
			민간인	0	0	2	2	0
안보과정		계		190	189	189	197	201
		육군		42	43	38	49	46
		해군		20	16	21	18	16
		공군		23	23	25	20	22
		해병대		3	3	3	3	3
		일반	소계	102	104	102	107	114
			공무원	62	69	64	59	65
			군무원	3	3	4	7	4
			민간인	37	32	34	41	45
최고경영자 과정		계		38	22	22	38	29
		육군		32	13	10	23	20
		해군		4	5	7	9	2
		공군		2	4	3	6	5
		해병대		0	0	2	0	2
		일반	소계	0	0	0	0	0
			공무원	0	0	0	0	0
			군무원	0	0	0	0	0
			민간인	0	0	0	0	0
합동고급과정		계		116	116	115	118	121
		육군		64	64	64	63	65
		해군		20	17	14	24	22
		공군		24	26	27	26	26
		해병대		3	3	4	1	1
		일반	소계	5	6	6	4	7
			공무원	4	4	4	4	5
			군무원	1	2	2	0	2
			민간인	0	0	0	0	0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학위과정	박사	계		4	13	5	5	11
		육군		1	5	3	3	6
		해군		2	4	1	0	1
		공군		1	4	1	2	2
		해병대		0	0	0	0	1
		일반	소계	0	0	0	0	1
			공무원	0	0	0	0	0
			군무원	0	0	0	0	0
			민간인	0	0	0	0	1
	석사	계		197	107	177	186	194
		육군		80	62	95	111	119
		해군		52	13	21	10	14
		공군		42	12	21	26	25
		해병대		1	2	2	4	1
		일반	소계	22	18	38	35	35
			공무원	20	15	21	14	11
			군무원	1	2	16	20	21
			민간인	1	1	1	1	3
안보과정		계		195	197	205	207	216
		육군		44	44	46	44	44
		해군		12	6	11	13	19
		공군		22	20	25	22	28
		해병대		3	3	1	2	2
		일반	소계	114	124	122	126	123
			공무원	62	64	65	65	65
			군무원	6	7	4	6	4
			민간인	46	53	53	55	54
최고경영자 과정		계		17	30	30	32	32
		육군		10	20	25	24	24
		해군		6	7	0	3	3
		공군		1	2	4	5	5
		해병대		0	1	1	0	0
		일반	소계	0	0	0	0	0
			공무원	0	0	0	0	0
			군무원	0	0	0	0	0
			민간인	0	0	0	0	0
합동고급과정		계		117	112	119	117	114
		육군		61	63	64	65	67
		해군		22	17	18	22	18
		공군		26	24	25	21	24
		해병대		0	1	4	2	2
		일반	소계	8	7	8	7	3
			공무원	5	5	6	5	3
			군무원	3	2	2	2	0
			민간인	0	0	0	0	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대학교 수료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간 국방대 수료현황 추이분석을 통해 국방대학교 연간 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대학교 학사관리 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학위과정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에 개설된 석사 주·야간 과정, 박사 과정 - 교육목표는 국가안전보장과 군사·국방 관리 또는 국방과학에 관련되는 전공분야의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겸비한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것임 • 안보과정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에서 장성/대령급 군인, 4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 - 민·관·군 고위정책 관리자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안보 및 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기획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국가안전보장 이론, 국내·외 안보정세 분석, 군사 전략 및 국가 위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최고경영자과정은 : 전역(예정) 장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시하는 직무 특별교육 과정 - 전역에 따른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개척 및 사회지도자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 고취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음 • 합동고급과정 : 각군 중령급 선발자 및 공·군무원을 대상으로 48주의 교육을 실시 - 합동·연합 작전을 기획 및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함.
의미해석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의 박사과정은 2008년도부터 신설되어 수료현황이 2010년도부터 작성되었으며 2009년도에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2011년도의 수료생은 다른 해에 비해 박사 수료 인원이 많았음.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고급과정 수료생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

10. 보수교육 과정별 교육인원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과장(02-748-6720), 교육훈련정책담당(02-748-6722)

1. 통계표

□ 육 군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8,536	81,417	80,694	90,453	86,749	88,599	93,672	99,352	94,479	112,898
보병학교	소계	3,907	3,399	3,332	3,024	3,024	3,201	3,109	3,022	4,155	3,886
	고군과정	930	957	997	839	839	890	754	798	879	779
	초군과정	2,419	2,442	2,335	2,185	2,185	2,311	2,355	2,224	2,376	2,112
	부사관과정	558	-	-	-	-	-	-	-	900	995
포병학교	소계	5,203	4,773	3,286	5,904	4,003	3,851	5,196	4,710	4,342	4,745
	고군과정	290	295	315	282	267	281	267	152	262	260
	초군과정	1,060	1,119	1,109	1,086	1,222	1,054	1,172	1,222	1,245	1,454
	부사관과정	1,025	850	737	850	892	894	1,901	1,466	1,339	1,170
	병과정	2,828	2,509	1,125	3,686	1,622	1,622	1,856	1,870	1,496	1,861
기계화학교	소계	6,778	7,245	7,318	8,746	8,329	8,779	9,650	10,596	10,269	8,397
	고군과정	141	92	106	119	121	127	139	120	127	141
	초군과정	475	491	497	497	486	528	455	577	568	540
	부사관과정	1246	1,170	1,058	948	1,119	1,374	1,563	2,024	1,963	1,253
	병과정	4,916	5,492	5,657	7,182	6,603	6,750	7,493	7,875	7,611	6,463
공병학교	소계	10,111	5,804	5,886	3,495	5,768	5,275	6,384	7,188	6,156	6,473
	고군과정	146	145	150	122	129	127	127	127	154	136
	초군과정	421	434	430	414	474	482	482	474	364	361
	부사관과정	531	646	578	297	447	618	564	640	580	616
	병과정	9,013	4,579	4,728	2,662	4,718	4,048	5,211	5,947	5,058	5,360
정보통신학교	소계	6,582	6,268	6,702	6,646	6,620	7,317	6,857	8,484	7,514	7,285
	고군과정	134	140	169	120	152	134	143	169	168	146
	초군과정	645	697	704	544	777	584	629	722	649	663
	부사관과정	813	920	618	690	761	1,324	951	1,426	1,153	763
	병과정	4,990	4,511	5,211	5,292	4,930	5,275	5,134	6,167	5,544	5,713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항공학교	소계	728	1,059	896	1,158	940	1,241	1,062	1,069	899	960
	고군과정	65	67	33	66	66	67	65	58	66	58
	초군(양성)과정	76	77	74	74	73	88	94	93	90	98
	부사관과정	47	155	116	150	158	252	178	181	185	213
	병과정	540	760	673	868	643	834	725	737	558	591
정보학교	소 계	1,550	1,552	1,249	1,521	1,298	1,604	1,671	1,866	1,979	1,753
	고군과정	146	148	102	100	100	110	120	120	144	84
	초군과정	118	118	134	109	110	100	132	120	114	118
	부사관과정	322	322	202	295	301	462	387	470	522	455
	병과정	964	964	811	1,017	787	932	1,032	1,156	1,199	1,096
화생방학교	소 계	2,888	1,521	2,773	3,000	3,010	2,319	2,353	1,549	2,340	2,931
	고군과정	28	33	36	25	25	23	26	31	28	25
	초군과정	125	120	137	129	140	138	115	145	146	139
	부사관과정	167	153	160	171	245	207	281	249	198	194
	병과정	2,568	1,215	2,440	2,675	2,600	1,951	1,931	1,124	1,968	2,573
방공학교	소 계	2,523	2,695	2,418	3,331	3,017	2,868	2,890	3,284	3,219	2,887
	고군과정	33	24	29	24	27	29	25	32	24	26
	초군과정	113	157	138	148	165	115	179	188	205	202
	부사관과정	272	292	235	288	187	326	424	456	404	275
	병과정	2,105	2,222	2,016	2,871	2,638	2,398	2,262	2,608	2,586	2,384
종합군수학교	소 계	19,301	17,710	18,072	21,897	22,290	20,792	18,380	19,009	18,340	20,808
	고군과정	128	122	141	147	78	122	97	87	94	96
	초군과정	405	420	470	531	433	454	455	515	498	505
	부사관과정	1,750	1,678	1,631	1,842	1,827	2,520	1,870	2,002	1,884	2,199
	병과정	17,018	15,490	15,830	19,377	19,952	17,696	15,958	16,405	15,864	18,008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합행정학교	소 계	3,670	4,135	3,636	3,886	2,539	4,161	3,691	3,676	3,852	4,109
	고군과정	114	104	113	98	39	89	82	72	79	104
	초군과정	290	373	363	340	285	231	283	449	334	372
	부사관과정	324	452	547	390	129	681	565	382	373	542
	병과정	2,942	3,206	2,613	3,058	2,086	3,160	2,761	2,773	3,066	3,091
의무학교	소 계	4,495	4,359	4,784	6,081	4,838	5,599	6,364	6,716	5,473	6,218
	고군과정	80	63	59	61	37	43	51	38	33	43
	초군과정	157	91	56	58	104	89	133	192	162	179
	부사관과정	104	175	253	501	238	359	489	311	481	270
	병과정	4,154	4,030	4,416	5,461	4,459	5,108	5,691	6,175	4,797	5,726
부사관학교	소 계	2,394	2,402	2,464	2,460	2,460	3,112	3,904	4,503	3,480	3,267
	부사관과정	2,394	2,402	2,464	2,460	2,460	3,112	3,904	4,503	3,480	3,267
수송교육단 병과정		16,928	17,294	16,831	18,134	17,648	16,615	19,909	20,610	19,424	36,807
특수전교육단	소 계	1,478	1,201	1,047	1,170	965	1,865	2,252	3,070	3,037	2,372
	부사관과정	1,445	1,150	1,007	1,129	928	1,834	2,213	2,423	2,487	1,972
	병과정	33	51	40	41	37	31	39	647	550	400

□ 해 군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284	6,021	4,828	6,244	8,114	9,987	12,922	11,978	13,123	14,404
전투병과학교	소 계	4,350	3,825	2,958	3,855	3,204	3,373	3,282	3,646	3,835	4,898
	고군과정	-	-	-	-	-	-	-	-	61	192
	초군과정	277	272	261	258	199	219	159	292	339	644
	부사관과정	330	490	505	601	677	440	559	531	651	682
	병과정	3,743	3,063	2,192	2,996	2,328	2,714	2,564	2,823	2,784	3,380
정보통신학교	소 계	1,171	1,370	1,249	1,595	1,057	1,064	1,298	1,124	1,421	1,735
	초군과정	27	31	33	30	54	56	38	48	53	6
	부사관과정	387	408	437	696	311	325	328	309	526	737
	병과정	757	931	779	869	692	683	932	767	842	992
기술행정학교	소 계	-	-	-	-	3,117	3,804	6,515	5,409	5,931	5,833
	고군과정	-	-	-	-	-	-	-	-	-	15 (신설)
	초군과정	-	-	-	-	162	117	171	237	121	87
	부사관과정	-	-	-	-	1261	1044	1132	678	971	1,219
	병과정	-	-	-	-	1,694	2,643	5,212	4,494	4,839	4,512
전투체계학교	소 계	-	-	-	-	-	815	781	778	1,038	1,021
	초군과정	-	-	-	-	-	13	13	17	25	16
	부사관과정	-	-	-	-	-	319	321	392	575	570
	병과정	-	-	-	-	-	483	447	369	438	435
작전사령부	소 계	763	826	621	794	736	931	1,046	1,021	898	917
	장교과정	209	271	185	158	268	273	358	403	345	344
	부사관과정	351	320	252	435	279	425	447	354	340	357
	병과정	203	235	184	201	189	233	241	264	213	216

□ 공 군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8,366	22,077	20,450	23,588	24,272	23,397	26,659	24,459	25,285	25,543
정보통신학교	소 계	2,849	3,891	2,200	2,946	3,306	3,686	4,093	3,156	3,278	3,471
	초군과정	126	238	139	316	220	297	350	573	444	708
	부사관과정	734	762	532	543	677	1,067	1,583	510	682	573
	병과정	1,989	2,891	1,529	2,087	2,409	2,322	2,160	2,073	2,152	2,190
군수1학교	소 계	5,592	3,775	3,449	3,891	4,467	3,932	4,222	4,486	4,291	4,476
	초군과정	347	144	143	204	93	88	91	227	295	247
	부사관과정	1,133	898	983	982	1,404	1,114	1,286	1,167	962	1,105
	병과정	4,112	2733	2,323	2,705	2,970	2,730	2,845	3,092	3,034	3,124
군수2학교	소 계	4,394	6,008	5,560	6,222	7,401	6,900	7,639	6,767	7,732	7,221
	초군과정	42	76	120	122	111	164	153	188	250	393
	부사관과정	285	371	414	634	691	601	765	660	520	508
	병과정	4,067	5,561	5,026	5,466	6,599	6,135	6,721	5,919	6,962	6,320
방공포병학교	소 계	1,812	1,772	1,887	1,930	1,946	1,834	2,137	1,491	1,780	2,291
	초군과정	100	87	119	186	76	90	82	107	115	103
	부사관과정	257	196	249	378	314	334	325	260	346	492
	병과정	1,455	1,489	1,519	1,366	1,556	1,410	1,730	1,124	1,319	1,696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행정학교	소 계	2,388	5,270	5,462	6,731	5,547	5,402	6,978	7,012	6,682	6,542
	초군 과정	592	755	1,793	1,810	257	677	2,095	1,886	1,755	1,980
	부사관 과정	367	612	899	1,256	854	1,048	954	990	1,095	718
	병 과정	1,429	3,903	2,770	3,665	4,436	3,677	3,929	4,136	3,832	3,844
항공안전관리단	소 계	273	255	751	748	543	533	533	568	547	589
	장교 과정	273	185	634	630	422	470	476	503	482	370
	부사관 과정	-	70	117	118	121	63	57	65	65	219
공지작전학교	소 계	739	785	847	812	765	818	787	716	723	711
	장교 과정	629	665	697	662	640	703	703	527	560	524
	부사관 과정	110	120	150	150	125	115	84	189	163	187
공군대학	고군반 (SOC)	319	321	294	308	297	292	270	263	252	242

□ 해 병 대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061	2,115	2,071	2,068	2,678	2,627	3,229	4,402	4,730	4,581
고군 과정	38	40	31	33	43	49	87	76	72	53
초군 과정	243	225	236	254	277	282	273	335	335	137
부사관 과정	297	325	276	249	293	301	464	916	1,303	1,282
병 과정	1,483	1,525	1,528	1,532	2,065	1,995	2,405	3,075	3,020	3,109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 계 명	보수교육 과정별 교육인원 현황
작성목적(배경)	학교교육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국민에게 공개
자료 출처	국방부(각 군 병과학교 등 보수교육기관 자료 종합)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 보수교육이란 기 양성된 군인의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 능력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해당 병과와 특기에 대한 기초·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정신전력지도,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
의미 해석	• 보수교육은 각 군의 학교교육 기관별로 종합을 하였으나, 일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통합되어 있고, 학교기관은 장교, 부사관, 병 과정이 개설된 학교(기관)와 장교, 부사관 또는 병 과정만 개설된 학교(기관)도 있음. • 육군은 초군/고군반 장교 현황은 병과학교별로 분석하였고, 부사관은 각 병과학교와 부사관학교, 특수전교육단으로 구분하였음. • 항공학교는 양성교육반 인원(장교/준사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교단 상·원사반은 부사관 학교 인원에 포함되었음. • 수송(운전)교육 인원은 수송 교육단 출신 병사만 포함하였음. • 해군은 전투병과 고군반은 2013년에 신설되었으며, 각 학교 기관의 장교 교육은 초군반 과정수료 인원 현황임. • 해군 기술행정학교는 2009년에 기술학교와 행정학교가 통합되었으며, 전투체계학교는 2010년 10월에 창설되었음. • 공군은 지휘관 및 참모과정(고군반)을 공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안전관리단과 공지작전학교는 장교와 부사관만 교육하고 있음. 특히 공지작전학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교육수료 인원을 포함하였음.

11. 사관학교 모집 경쟁률

작성부서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과장(02-748-6720), 교육훈련정책담당(02-748-6729)

1. 통계표

□ 육군사관학교

구 분	전체 경쟁률	남자 경쟁률	여자 경쟁률
2005	19.9 : 1	18.6 : 1	34.9 : 1
2006	18.5 : 1	16.9 : 1	33.5 : 1
2007	19.1 : 1	17.1 : 1	37.7 : 1
2008	18.3 : 1	16.5 : 1	34.6 : 1
2009	20.2 : 1	18.3 : 1	37.5 : 1
2010	23.8 : 1	21.9 : 1	40.4 : 1
2011	21.9 : 1	20.2 : 1	37.1 : 1
2012	22.1 : 1	20.4 : 1	37.8 : 1
2013	20.6 : 1	18.1 : 1	43.3 : 1
2014	18.6 : 1	16.2 : 1	40.4 : 1

□ 해군사관학교

구 분	전체 경쟁률	남자 경쟁률	여자 경쟁률
2005	21.8 : 1	19.4 : 1	42.7 : 1
2006	21.7 : 1	19.7 : 1	39.4 : 1
2007	22.8 : 1	20.5 : 1	43.1 : 1
2008	21.3 : 1	19.2 : 1	40.1 : 1
2009	25.8 : 1	23.2 : 1	48.4 : 1
2010	27.7 : 1	24.4 : 1	58.0 : 1
2011	26.1 : 1	23.4 : 1	50.3 : 1
2012	27.2 : 1	24.4 : 1	52.2 : 1
2013	30.5 : 1	26.6 : 1	65.3 : 1
2014	23.1 : 1	20.5 : 1	46.2 : 1

□ 공군사관학교

구 분	전체 경쟁률	남자 경쟁률	여자 경쟁률
2005	19.6 : 1	18.3 : 1	31.8 : 1
2006	18.9 : 1	17.5 : 1	31.9 : 1
2007	18.2 : 1	16.5 : 1	34.3 : 1
2008	20.2 : 1	18.4 : 1	36.8 : 1
2009	23.2 : 1	21.0 : 1	45.4 : 1
2010	23.4 : 1	21.0: 1	47.6 : 1
2011	26.1 : 1	23.8 : 1	49.8 : 1
2012	25.7 : 1	23.1 : 1	51.4 : 1
2013	36.8 : 1	33.2 : 1	72.1 : 1
2014	25.6 : 1	23.5 : 1	44.6 : 1

□ 간호사관학교

구 분	전체 경쟁률	여자 경쟁률	남자 경쟁률
2005	26.6 : 1	26.6 : 1	·
2006	29.3 : 1	29.3 : 1	·
2007	27.6 : 1	27.6 : 1	·
2008	27.5 : 1	27.5 : 1	·
2009	29.0 : 1	29.0 : 1	·
2010	30.7 : 1	30.7 : 1	·
2011	42.6 : 1	37.2 : 1	94.3 : 1
2012	38.3 : 1	36.9 : 1	51.0 : 1
2013	34.1 : 1	33.7 : 1	37.8 : 1
2014	36.4 : 1	35.0 : 1	49.5 : 1

□ 육군 3사관학교

구 분	전체 경쟁률	남자 경쟁률	여자 경쟁률
2005	3.0 : 1	3.0 : 1	·
2006	2.3 : 1	2.3 : 1	·
2007	2.7 : 1	2.7 : 1	·
2008	2.8 : 1	2.8 : 1	·
2009	3.1 : 1	3.1 : 1	·
2010	2.8 : 1	2.8 : 1	·
2011	3.4 : 1	3.4 : 1	·
2012	3.9 : 1	3.9 : 1	·
2013	4.6 : 1	4.6 : 1	·
2014	7.3 : 1	5.8 : 1	48.1 :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 계 명	사관학교 모집 경쟁률
작성목적(배경)	사관학교 지원과 경쟁률 등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학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자료출처	국방부(각군 사관학교 종합)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의미해석	• 통계연보의 2014년 경쟁률은 2014년에 모집하여 2015년에 입학한 생도를 의미함. • 사관학교 모집인원은 매년 변동이 있으며, 여자생도는 모집인원의 10%(간호사관학교는 남자생도 10%)를 선발하고 있음. 예) 300명 모집시 남생도 270명, 여생도 30명으로 구분하여 선발 • 단, 3사관학교는 여생도를 20명으로 한정하여 선발하고 있음. • 간호사관학교, 3사관학교의 경쟁률이 없는 부분은 모집이 없었던 해임.

12.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

작성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02-748-5130), 인력정책담당(02-748-5132)

1. 통계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괄	2.6 : 1	2.8 : 1	2.7 : 1	2.2 : 1	2.2 : 1	2.2 : 1	3.0 : 1	3.4 : 1	4.1 : 1	4.5 : 1
학군사관후보생	2.2 : 1	2.8 : 1	2.7 : 1	2.2 : 1	2.1 : 1	2.0 : 1	3.3 : 1	3.2 : 1	3.5 : 1	4.4 : 1
학사사관후보생	3.1 : 1	2.5 : 1	2.6 : 1	2.0 : 1	2.3 : 1	2.6 : 1	2.3 : 1	3.7 : 1	6.2 : 1	4.6 : 1
기 타	4.5 : 1	4.0 : 1	3.2 : 1	3.0 : 1	3.0 : 1	3.0 : 1	2.9 : 1	3.7 : 1	5.4 : 1	5.6 :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
작성목적 (배경)	인력획득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장교모집 실적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지원율 : 해당 선발과정 지원자 대비 선발인원의 비율 • 학군사관후보생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 학사사관후보생 : 학생군사교육이 없는 사관후보생 과정 • 기 타 : 육군에서 모집하는 간부사관, 전문사관 등
의미해석	• 지원율은 간부 지원자 수와 모집인원에 영향을 받음. • '07년 병 복무기간 단축(24개월 → 18개월) 추진으로 '10년까지 전반적인 지원율 하락 현상 발생 • '10년 병 복무기간 단축 중지 결정, 모집인원 감축, 간부지원 장려책 시행으로 '11년부터 최근 '14년까지 지원율이 점진적으로 향상됨.
유의점 ·기타	• 지원율이 획득환경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은 가능하나, 선발자원의 자질을 판단하는 대표 지표로는 활용에 제한됨.

13. 군 사망사고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 과장(02-748-5160), 안전계획담당(02-748-5162)

1. 통계표

(단위 : 명)

구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충격	익사	화재	기타
2005	124	74	64	8	1	1	50	21	4	1	5	11		8
2006	128	78	77	1			50	25	3		2	7		13
2007	121	82	80	2			39	22	3		2	5		7
2008	134	76	75			1	58	25	8	1	9	7		8
2009	113	81	81				32	13			8	7		4
2010	129	83	82		1		46	9	13		8	4		12
2011	143	101	97	4			42	18	5	1	5	2		11
2012	111	73	72		1		38	17	1		5	2	3	10
2013	117	80	79			1	37	15	2		7	6	·	7
2014	101	76	67	5	1	3	25	12		1	2	3		7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사망사고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 사망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조사하여 사고예방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자료 종합)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군 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됨. •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 • 군기사고 :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의미해석	• 군 사망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05년 124명 → '14년 101명) • '14년 군 사망사고(101명)는 통계유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11년 143명 대비 32감소) • 안전사고의 경우 교통(차량)사고가, 군기사고의 경우 자살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군내 자살률의 경우 일반국민(20~29세 남자 기준)과 다른 나라 군내 자살자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임. * '11년 10만 명당 자살자 수 : 군내 자살률(15.2명), 일반국민(28.2명), 미군(22명) * '12년 10만 명당 자살자 수 : 군내 자살률(11.1명), 일반국민(23.5명) * '13년 10만 명당 자살자 수 : 군내 자살률(12.2명), 일반국민(18명) * '14년 10만 명당 자살자수 : 군내 자살률(10.1명), 일반국민(17.8명)
유의점 ·기타	• 본 지표는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부대 지휘관리, 각종 제도,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군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된 자료임. • 군의 각종 예방활동과 무관한 사망자(개인 질병, 민간인에 의한 피살, 의로운 죽음, 전사처리 등)는 제외되었음. • 자살은 다양한 촉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있음. • 군은 사망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식별-관리-분리의 단계별 예방조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국방헬프콜 운용 등 예방 시스템 보강

14.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담당부서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팀장(02-748-5250), 유해발굴정책담당(02-748-5254)

1. 통계표

(단위 : 구수)

구 분	계	20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8,476	953	138	92	378	673	1,137	1,331	1,301	990	666	817
유해 신원확인	101	18	2	2	9	13	10	6	8	11	5	17

*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현황은 감식·유전자검사과정에서 국적·신분이 변동가능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6·25 전사자 유해발굴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모시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해발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군 전사자 :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하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서 정한 자에 한함. •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 전사자 유해 중 유품·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유해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의미해석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00년 육군본부에서 시작하여 '07년 국방부로 전환되어 추진 중임. • 유해발굴사업은 지역개발, 6·25 참전용사 고령화로 '10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에 있음. • 전사자유해 신원확인은 발굴유해와 유가족 DNA 일치결과, 발굴지역 戰史, 감식결과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함.
유의점 ·기타	• 유해발굴현황은 UN군, 중국군, 북한군 현황을 제외한 한국군 전사자 유해 현황임.

보 건 복 지 분 야

1. 군 병원 진료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보건정책과 과장(02-748-6640), 보건기획담당(02-748-6644)

1. 통계표

□ 군 병원 진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151,256	1,237,610	1,181,553	1,252,101	1,299,277	1,299,157	1,424,732
입원진료	40,913	46,508	45,105	50,503	46,585	46,025	46,449
외래진료	1,110,343	1,191,102	1,136,448	1,201,598	1,252,692	1,253,132	1,378,283

□ 군 병원별 입원진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0,913	46,508	45,105	50,503	46,585	46,025	46,449
서울지구	253	250	220	176	219	229	343
수 도	8,909	11,406	12,146	13,789	13,082	13,714	13,004
부 산	2,129	2,180	2,086	2,401	2,056	1,751	1,641
함 평	2,932	3,315	2,959	3,427	3,232	3,164	2,824
대 구	3,255	3,232	3,175	4,026	3,753	3,006	2,722
대 전	3,804	4,873	4,257	4,714	3,962	4,609	4,441
고 양	2,875	2,939	1,877	2,025	2,403	2,078	2,344
춘 천	2,553	2,612	2,722	3,071	3,100	3,009	3,032
홍 천	2,656	2,621	2,969	3,251	2,744	2,300	2,524
일 동	2,350	2,412	2,688	2,607	2,232	2,034	2,263
양 주	4,246	4,940	5,002	4,991	4,724	5,018	5,388
강 릉	1,600	1,894	1,728	2,081	1,914	1,680	1,461
원 주	124	160	183	272	220	195	266
청 평	1,643	1,625	1,447	2,062	1,534	1,496	1,935
포 항	764	1,056	891	783	650	742	782
해양의료원	459	581	499	610	515	639	991
항공우주의료원	361	412	256	217	245	361	488

□ 군 병원별 외래진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110,343	1,191,102	1,136,448	1,201,598	1,252,692	1,253,132	1,378,283
서울지구	31,777	33,837	30,498	29,129	30,760	29,956	34,712
수 도	178,132	208,958	222,030	243,062	244,065	249,852	265,789
부 산	40,862	39,194	35,791	36,265	43,306	39,188	40,642
함 평	49,081	54,777	50,798	45,520	46,721	50,434	58,432
대 구	51,814	51,361	47,731	47,538	53,384	51,282	53,130
대 전	103,363	112,974	105,163	113,575	131,135	136,037	148,996
고 양	86,149	102,913	78,429	92,991	95,530	90,952	104,483
춘 천	54,351	56,776	53,351	60,773	70,962	72,980	89,693
홍 천	81,563	84,879	82,297	85,849	82,231	78,791	79,253
일 동	84,382	90,456	81,567	80,665	82,162	75,632	84,612
양 주	135,838	132,859	143,116	151,750	139,013	136,856	149,778
강 릉	42,773	42,568	37,836	43,991	51,607	55,669	63,442
원 주	26,192	26,027	23,444	25,042	25,394	25,956	29,272
청 평	36,855	40,826	34,002	37,738	36,330	34,051	46,419
포 항	39,953	45,671	44,154	42,207	44,946	41,652	46,493
해양의료원	44,064	51,072	47,727	45,795	53,840	55,818	49,751
항공우주의료원	23,194	15,954	18,514	19,708	21,306	28,026	33,386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병원 진료 현황
작성목적(배경)	군 병원의 진료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인력 소요 판정 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의료통계정보체계(DMSIS)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용어설명	• 입원 진료현황 : 군병원 진료과별 입원진료 건수의 합계 • 외래 진료현황 : 군병원 진료과별 외래진료 건수의 합계 * '진료 미실시, 의무기록 복사' 등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의미해석	• 2014년 외래 진료 건수는 2013년 대비 125,151건(10%) 증가하였으며, 2008년 대비 267,940건(24.1%)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 군병원 외래진료 건수는 증가 추세며, 셔틀버스 운영 등 진료 접근성 향상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다빈도 진료과는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피부과, 치과 순이며 예년과 특이한 차이는 없음. • 2014년 입원진료 건수는 2013년 대비 424건(0.9%) 증가하였으며, 해·공군 소속 군 병원 입원 등이 주 증가 원인임. • 입원환자가 많은 주요 입원 진료과는 외래와 마찬가지로 정형외과, 내과, 외과 순이며 근골격계 질환 관련 진료과에 집중됨.

2. 현역장병 민간병원 이용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보건정책과 과장(02-748-6640), 보건지원담당(02-748-6657)

1. 통계표

□ 이용환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간병원 이용 환자 현황						
	민간위탁진료			현역병 건강보험			
	계	치료	검사	계	입원	외래	약국
2008	33,218	2,197	31,021	1,151,219	13,235	747,454	390,530
2009	49,216	3,426	45,790	1,321,051	17,120	862,206	441,725
2010	42,673	2,728	39,945	1,115,828	14,979	732,740	368,109
2011	45,740	2,969	42,771	1,076,738	14,021	700,286	362,431
2012	47,743	2,787	44,956	1,409,993	18,959	923,232	467,802
2013	54,439	2,930	51,509	1,035,267	16,744	680,759	337,764
2014	102,780	2,815	99,965	1,273,725	23,421	845,100	405,204

* 현역병 건강보험 건수에는 민간위탁 진료건수가 중복되어 있음.(현역병의 치료 및 검사 건수)

□ 민간병원 이용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민간위탁진료			현역병 건강보험			
	계	치료	검사	계	입원	외래	약국
2008	3,980	3,254	726	30,429	14,064	11,465	4,900
2009	5,497	4,528	969	40,413	20,730	13,947	5,736
2010	4,253	3,205	1,048	33,169	16,364	11,939	4,866
2011	4,008	2,994	1,014	31,922	15,022	11,936	4,964
2012	4,415	3,357	1,058	40,866	19,355	15,478	6,033
2013	4,161	2,794	1,367	32,115	16,217	11,760	4,138
2014	4,305	2,221	2,084	42,883	21,750	15,933	5,20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현역장병 민간병원 이용 현황
작성목적 (배경)	현역장병의 민간병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인력 소요 판정 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민간위탁진료 : 민간위탁진료는 위탁치료와 위탁검사로 구분되며 군병원 진료 능력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현역병 건강보험 : 현역병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공단부담금을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의미해석	• 2014년 민간위탁진료는 위탁치료와 위탁검사로 구분되며 2014년 위탁진료 건수는 전년 대비 48,341건(88%) 증가하였고 위탁진료비는 전년 대비 1.4억(3%) 증가하였음. • 2014년 위탁치료 건수 및 치료비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위탁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48,456건(94%) 증가하였고, 검사비는 전년 대비 7.2억(52%) 증가하였음. • 이는 의료수준의 향상과 진단방법 변화 추세에 따라 고가의 위탁검사가 증가하였고, 14년부터 군병원 시행이 어려운 외래 간부 환자 급여검사 항목이 수탁(본인 부담)검사에서 위탁(국가 부담)검사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지능 검사(단가 10만원), 종합심리검사(단가 18만원) 건수 증가 등 * 환자관리훈령 제40조제2항제1호가 개정 ('14.2.28.) • 2014년 현역장병 건강보험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238,458건(23%) 증가하였으며, 2014년 현역병건강보험 부담금은 2013년 대비 107억(34%) 증가함. •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되고 있어 현역병건강보험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군인연금기금 자산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군인연금과 과장(02-748-6660), 연금기금담당(02-748-6668)

1. 통계표

(단위 : 억 원)

투자부문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계(기금자산)	2,659	3,410	4,740	4,766	4,654	3,844	6,207	7,057	8,624	10,303
○ 예탁금 및 위탁금	2,388	3,140	4,471	4,498	4,047	3,226	3,769	4,629	6,204	7,893
-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	1,600	1,100	-	200	500	700	500	200	-
- 금융기관예치 등	388	1,540	3,371	4,498	3,847	2,726	3,069	4,129	6,004	7,893
○ 부동산 등	271	270	269	268	607	618	2,438	2,428	2,420	2,41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인연금기금 자산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인연금기금 자산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여 군인연금기금 자산 운용 관련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군인연금기금 결산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 정부가 연·기금 등의 자금을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한다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의미해석	•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부동산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산 재평가 실시에 따른 것이며, 전반적으로 기금의 자산은 증가추세에 있음 • 공자기금 예탁금이 감소추세인 것은 만기 도래 회수에 따른 것이며, 회수된 공자기금은 금융기관에 재 예치함.
유의점 ·기타	• 본 통계는 군인연금기금 연도별 자산현황을 나타내며, 매년 말 군인연금기금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됨. • 군인연금기금 자산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건물, 토지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군인연금과 과장(02-748-6660), 연금운영담당(02-748-6662)

□ 통계표

(단위 : 억 원)

구 분	수 입				
	계	기여금	국가부담금	국가보전금	기타경상이전 수입
2005	16,658	2,864	5,215	8,564	15
2006	17,327	3,028	5,523	8,755	21
2007	18,510	3,083	5,860	9,536	31
2008	19,389	3,128	6,730	9,492	39
2009	19,710	3,127	7,124	9,409	50
2010	21,007	3,223	7,155	10,566	63
2011	23,545	3,447	7,773	12,266	59
2012	25,450	3,726	9,165	12,499	60
2013	27,117	4,482	8,888	13,692	55
2014	28,352	4,995	9,563	13,733	61

(단위 : 억 원)

구 분	지 출						
	계	연금 (3종)	퇴직 일시금	재해보상 급여	퇴직수당	기타	기금 관리비
2005	16,076	12,215	1,446	843	1,571	-	1
2006	16,742	12,949	1,474	879	1,439	-	1
2007	18,069	13,743	1,599	912	1,813	-	2
2008	19,322	14,615	1,721	928	2,050	6	2
2009	20,569	15,669	1,591	946	2,335	25	3
2010	22,068	17,134	1,621	987	2,462	△145	9
2011	23,140	18,215	1,553	1,006	2,334	28	4
2012	24,741	19,619	1,693	1,040	2,380	4	5
2013	25,763	20,778	1,644	979	2,358	-	4
2014	26,923	21,786	1,624	1,052	2,457	-	4

* 군인연금기금 운용현황은 결산 기준으로 작성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인연금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파악하여 군인연금 지급 관련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군인연금기금 결산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기여금 :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부사관 이상 군인이 매년 납입하는 기여금 • 국가부담금 : 기여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기금운영비부담금 등이 있으며,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 국가보전금 :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보전하여 주는 금액 • 기타경상이전수입 : 공무원으로 재취임한 자에 대한 반환금 및 부정수급자의 환수금 등 • 연금(3종)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지급하는 퇴역연금 및 퇴역연금 수령 중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군인연금대상자 중 사립학교 및 공무원으로 재취업 후 퇴직한 자를 위해 지급하는 연금 이체금 • 퇴직일시금 :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 및 연금미대상자가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 • 재해보상급여 : 군인이 군복무 중 공무상으로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및 기타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지급하는 급여 등 •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기타 : 위헌결정소요, 소득심사제 감액 등 • 기금관리비 :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미해석	• 평균수명 증가, 연금 선택률 상승 등으로 연금 수급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지출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연금선택률 : 연금수급권이 있는 신규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 • 2014년도 군인연금 수입금은 2조 8,352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개인기여금 및 국가부담금 수입 증대 등에 기인함. • 2014년도 군인연금 지출금은 2조 6,923억 원이며 전년대비 4.5% 증가한 이유는 연금 수급인원 증가 및 지급단가 상승 때문임.
유의점 ·기타	• 본 통계는 군인연금기금 연도별 운용현황을 나타내며, 매년 말 군인연금기금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됨. • 군인연금지출금은 개인기여금 및 국가부담금·보전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금이 지출금보다 많은 경우 기금에 적립·운용하고, 지출금이 부족할 경우 기금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음.

5. 병사 계급별 1인당 인력 운영비

작성부서 :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0), 인건비담당(02-748-5335)

1. 통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병 장	3,439.4	3,614.6	3,873.9	4,355.3	4,780.8	5,233.2
	상 병	3,325.4	3,493.4	3,747.9	4,204.1	4,608.0	5,034.0
	일 병	3,223.4	3,385.4	3,636.3	4,069.7	4,453.2	4,856.4
	이 병	3,151.4	3,308.6	3,555.9	3,970.1	4,342.8	4,729.2
봉급	병 장	1,170.0	1,245.6	1,296.0	1,555.2	1,788.0	2,056.8
	상 병	1,056.0	1,124.4	1,170.0	1,404.0	1,615.2	1,857.6
	일 병	954.0	1,016.4	1,058.4	1,269.6	1,460.4	1,680.0
	이 병	882.0	939.6	978.0	1,170.0	1,350.0	1,552.8
급식비(전계급 동일)		1,950.2	2,008.1	2,118.6	2,214.5	2,365.2	2,505.6
피복비(전계급 동일)		319.2	360.9	459.3	585.6	627.6	670.8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병사 계급별 1인당 인력 운영비
작성목적 (배경)	병사들의 인력운영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15년 예산편성내역)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2일 기준('15년 예산 국회 확정일)
용어설명	• 인력운영비 : 봉급, 급식비, 피복비가 포함된 금액임
의미해석	• 병 봉급은 매년 15%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 및 피복비의 경우, 급식비 단가인상(6,848원→ 7,190원, 5%) 및 동운동복 추가 1착(1→ 2착) 지급으로 인하여 6% 수준 증가

6. 군 어린이집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복지정책과 과장(02-748-6610), 가족지원담당(02-748-6625)

1. 통계표

(단위 :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	8	9	9	11	12	19	41	57	68
육 군	2	2	2	2	2	3	6	22	31	40
해 군	0	0	0	0	0	0	2	5	8	10
공 군	6	6	7	7	8	8	9	12	16	16
국 직	0	0	0	0	1	1	2	2	2	2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어린이집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시설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군 어린이집 결산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만0~5세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기관
의미해석	• 저출산시대에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수요 및 필요성 증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군내 여군인력과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 추세임. • 향후, 추가 보육수요 반영과 군 관사 건립과 연계, 연차별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보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예정임.

정 보 화 분 야

1. 업무용 PC 보유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02-748-5950),
정보자원정책담당(02-748-5958)

1. 통계표

(단위 : 대)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계	223,337	260,771	282,247	282,247	292,169
	사무용	171,079	192,356	206,258	206,258	208,257
	인터넷	10,812	12,054	15,106	15,106	16,250
	공 용	10,758	11,714	12,159	12,159	15,525
	정보체계용	13,366	15,171	16,525	16,525	21,123
	교육용	17,322	17,970	20,693	20,693	16,616
	C4I	-	11,506	11,506	11,506	14,398
육군	소 계	130,416	150,720	157,418	157,418	161,578
	사무용	101,003	117,953	124,481	124,481	124,248
	인터넷	4,930	5,180	5,180	5,180	5,927
	공 용	6,461	6,673	6,673	6,673	9,493
	정보체계용	6,600	6,600	6,770	6,770	10,462
	교육용	11,152	11,152	11,152	11,152	7,039
	C4I	-	3,162	3,162	3,162	4,409
해군	소 계	29,780	34,537	36,193	36,193	36,193
	사무용	24,210	26,518	26,518	26,518	26,518
	인터넷	1,466	1,585	3,030	3,030	3,030
	공 용	1,358	1,470	1,000	1,000	1,000
	정보체계용	1,725	2,066	1,909	1,909	1,909
	교육용	1,021	1,103	1,941	1,941	1,941
	C4I	-	1,795	1,795	1,795	1,795

(단위 : 대)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군	소 계	34,895	40,243	42,132	42,132	43,549
	사무용	25,392	27,082	27,726	27,726	27,726
	인터넷	1,574	1,574	2,078	2,078	2,078
	공 용	1,127	1,397	1,397	1,397	1,397
	정보체계용	4,412	5,499	5,999	5,999	6,361
	교육용	2,390	2,390	2,631	2,631	2,631
	C4I	-	2,301	2,301	2,301	3,356
해병대	소 계	-	-	7,324	7,324	8,946
	사무용	-	-	6,072	6,072	7,005
	인터넷	-	-	769	769	781
	공 용	-	-	208	208	208
	정보체계용	-	-	93	93	275
	교육용	-	-	182	182	182
	C4I	-	-	-	-	495
국방부 · 국직	소 계	28,516	35,271	39,180	39,180	41,903
	사무용	20,474	20,803	21,461	21,461	22,760
	인터넷	2,842	3,715	4,049	4,049	4,434
	공 용	1,812	2,174	2,881	2,881	3,427
	정보체계용	629	1,006	1,754	1,754	2,116
	교육용	2,759	3,325	4,787	4,787	4,823
	C4I	-	4,248	4,248	4,248	4,343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업무용 PC 보유 현황
작성목적 (배경)	각 군/국직의 PC 인가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정보체계용 : 위병소, USB 통제, 바이러스 방역체계, 디지털전문처리, 브리핑/화상회의, 카메라, 레이더, 의료정보, 중앙통제용 등 • 교육용 : 정보화교육장, 사관생도, 학교기관, 비행교육 등 • 공 용 : 훈련, 임시조직(TF), 감사, 휴게실 및 인터넷 등
의미해석	• 사무용 - 실무자(간부, 행정/전산병 등 특수직위직) - PC 활용과 무관한 직위자 제한 - 공간제한 일부 부대(지휘통제실, 함정, 격오지 등)나 훈련용 PC는 일체형 또는 노트북 인가 • 교육용 - 학교기관 교육생 1인 1대 - 사관학교, 정보화교육장 등 • 인터넷용 - 공용에 한해 전용 PC 인가(보유 PC의 10% 이내) - 각 군본부(정책부서) : 과(팀)당 1~2대 - 기타부서 : 처(부)당 1대, 대대급 1대 • 정보체계용 - 특정 정보체계 운영 목적으로 사무행정용과 겸용이 불가한 정보체계용 PC • 공 용 - 공공용PC(보유 PC의 3% 이내) - 조회/검색, 출장 및 훈련 등 - 공동 활용(감사, TF) 목적 PC - 사무행정용과 겸용이 불가한 업무용 PC • C4I : 각군 및 합참, 정보본부의 C4I 일부 단말기 교체
유의점 ·기타	• 해병대 현황은 2011년까지 해군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2012년부터 해군, 해병대 분리하여 작성 • 정보체계 활용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각 군/기관의 PC 인가현황 ☞ 업무용 PC 인가현황에는 사이버지식정보방 PC 대수 미포함 (예산/유지관리 별도) ☞ '13년 인가량 조사 미실시(2년 주기로 인가량 조사)

2. 각 군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02-748-5950),
통신서비스정책담당(02-748-5957)

1. 통계표

(단위 : 개소, 대)

구 분		사이버 지식정보방	인터넷PC
합 계	계	5,248	48,617
	육 군	4,155	40,112
	해 군	518	3,625
	공 군	432	3,513
	국 직	143	1,367
2009	소 계	746	7,261
	육 군	502	5,894
	해 군	151	767
	공 군	63	429
	국 직	30	171
2010	소 계	1,116	5,890
	육 군	887	4,691
	해 군	156	722
	공 군	45	252
	국 직	28	225
2012	소 계	3,386	35,466
	육 군	2,766	29,527
	해 군	211	2,136
	공 군	324	2,832
	국 직	85	97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각 군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현황
작성목적 (배경)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현황을 파악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 교체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사이버지식정보방 준공보고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사이버지식정보방 : 장병들의 사회와 정보단절 해소 및 자기개발/학습기회 제공 등을 위해 병영 내에 구축한 인터넷 PC방을 말함.
의미해석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사업은 2006. 3월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중대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4만여 대(전체계획의 75%)를 설치하였으며, • 2009~2010년간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잔여부대(GP, GOP, 도서지역, 함정 등 격오지 부대)에 13,151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축 완료하였음. • 2012년에 2006년 설치된 노후 PC 및 네트웍 장비 등을 교체하여 장병들의 인터넷PC 사용 환경을 개선하였음. • 2009, 2010년에 설치된 노후 PC 등은 2015, 2016년에 교체할 예정임.
유의점 ·기타	•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즉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가 구축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방부 소유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13 ~ '14년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을 구축하지 않음.

군 수 분 야

1. 군수품 조달집행액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과장(02-748-5710), 군수조달담당(02-748-5715)

1. 통계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6,721	30,791	31,436	34,878	36,546	37,809	40,572	41,031	44,484	44,611
중앙조달	계		23,201	27,144	27,047	29,902	31,718	32,954	35,683	34,758	34,954	33,833
	내자		18,831	21,501	20,021	20,889	21,573	21,925	26,833	25,555	25,679	23,108
	외자	소계	4,370	5,643	7,026	9,013	10,145	11,029	8,850	9,203	9,275	10,725
		상업	2,092	2,578	3,198	4,004	5,026	4,825	4,750	5,896	6,052	6,728
		FMS	2,278	3,065	3,828	5,009	5,119	6,204	4,100	3,307	3,223	3,997
부대조달			1,824	1,648	2,313	2,324	2,240	1,898	1,983	2,656	2,116	2,547
조달청조달			1,696	1,999	2,076	2,652	2,588	2,957	2,906	3,617	7,414	8,23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수품 조달집행액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수품의 계약 집행액 규모 및 조달원별 군수품 계약 집행액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조달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기관 조달집행실적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군수품 조달 : 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을 획득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종류는 중앙조달, 부대조달 및 조달청조달로 나누고 있음. • 중앙조달 : 각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이나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 • 부대조달 :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에서 각급 부대 운영에 필요한 품목이나 긴급구매 또는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품목 등을 직접 조달 • 조달청조달 : 상용품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위탁 구매하는 조달 • 상업구매 : 일반적 무역 상관례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구매 • FMS : 미국 대외군사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미국정부로부터 구매
의미해석	• 2014년 중앙조달의 비중은 전체의 75.8%으로 부대조달과 조달청 조달의 확대로 전년 보다 다소 감소 • 2014년 부대조달의 비중은 5.7%이며 전년대비 431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원인은 소규모 중앙조달 미실적품목의 부대조달 전환으로 부대 조달대상이 확대된데 있음. • 2014년 조달청 조달의 경우 그 비중은 18.4%이며 전년대비 817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방규격 상용화 전환, 유류의 조달원 변경 등 계약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달청 위탁구매 확대로 조달청 조달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유의점 ·기타	• 매년 12월 확정된 전력운영분야 조달계획 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으로 급식 및 각급부대 현금배정 품목은 제외되었음.

2. 기본급식 기준액

작성부서 : 국방부 물자관리과 과장(02-748-5720), 급식예산담당(02-748-5723)

1. 통계표

(단위 :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665	4,805	5,000	5,210	5,399	5,650	5,820	6,155	6,432	6,848
주식비(쌀)		1,179	1,084	1,050	1,118	956	823	767	786	800	910
부식비	소 계	3,022	3,243	3,401	3,527	3,861	4,171	4,327	4,627	4,890	5,088
	소채류	692	731	766	783	808	857	853	899	1,117	1,291
	수육류	1,116	1,205	1,321	1,418	1,616	1,741	1,815	1,863	1,901	1,863
	어개류	523	579	600	624	641	665	762	875	928	901
	장 류	442	468	462	69	64	74	77	77	94	82
	두채류	87	77	64	147	182	191	201	171	170	239
	조미류/ 기타·부식	162	183	188	486	550	643	619	742	680	712
후식비		464	478	549	565	582	656	726	742	742	85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기본급식 기준액
작성목적 (배경)	병 기본급식비의 연도별, 유형별 세부 분류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급식방침)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주식 : 밥 • 부식 : 반찬 - 소채류 : 배추, 당근, 깻잎 등 / 수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육가공 식품 등 - 어개류 : 생선, 조개류, 참치통조림 등 /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등 - 두채류 : 두부, 콩나물 - 조미류, 기타부식 : 설탕, 소금, 요리소스 등 • 후식 : 우유, 과일, 주스, 발효유 등
의미해석	• 장병들의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고 균형된 식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식의 질을 높이고 후식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
유의점 ·기타	• 병 기본급식 기준액은 농산물 등의 작황과 가격변동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3. 군 대민지원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과장(02-748-5770), 재난정책담당(02-748-5772)

1. 통계표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난 복구 지원	인력(명)	205,703	337,178	181,972	73,188	59,460	319,117	616,258	219,721	66,952	595,032
	장비(대)	5,587	13,829	2,607	2,167	1,748	5,500	12,010	6,660	581	14,259
농어촌 일손 돕기	인력(명)	-	146,794	180,103	107,849	98,074	127,343	80,777	95,916	81,091	86,591
	장비(대)	-	3,089	2,820	1,785	2,453	3,290	1,123	2,892	1,918	1,965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대민지원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가적 재난(태풍·호우 등) 가축질병(구제역, AI) 발생 또는 농어촌 일손 돕기 등 군의 모든 활동을 파악하여 대민지원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상황실 통계)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재난복구지원 : 태풍·호우·폭설 등 자연재난이나 산불·철도파업 등 인적재난 발생 시 실시되는 원상복구 및 예방작업에 대하여 군이 지자체 요청이나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행하는 지원 • 농어촌 일손 돕기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대해 군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제반 활동
의미해석	• 국가적 재난발생시 군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민지원을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최소66천명에서 최대 616천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13년 말 발생한 대규모 철도파업 발생시 469명의 군 병력이 투입되어 국가적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불법 파업 시 적극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하였음. • 필리핀 태풍피해 시 긴급구호로 대규모 이재민 발생에 국제적 구호 지원 노력으로 수송기 9대, 인력 153명을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음. • '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시, 약 37만 명의 인력지원 및 1만대의 구조장비 지원을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였음.

4. 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과장(02-748-5770), 재난정책담당(02-748-5772)

1. 통계표

□ 2014년 군 기능인력 관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관리 목표	현관리	관리 목표	현 관리	관리 목표	현관리	관리 목표	현 관리	관리 목표	현 관리
계	4,749	4,659	3,651	3,534	383	387	576	586	139	152
양성관리 (전동차 기관사등)	2,046	2,025	1,647	1,632	159	155	182	180	58	58
자원관리 (육상화물등)	2,703	2,634	2,004	1,902	224	232	394	406	81	94

□ 연도별 각 군 현황 관리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19,925	19,745	19,686	19,867
육 군	17,948	17,754	17,706	17,861
해 군	822	832	851	867
공 군	633	656	627	639
국 직	522	503	502	500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9,835	20,278	20,319	20,168	4,659
육 군	17,846	18,182	18,225	18,063	3,534
해 군	847	886	877	874	387
공 군	647	694	698	710	586
국 직	495	516	519	521	152

2. 통계 설명자료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통계명</td><td>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td></tr>
<tr><td>작성목적
(배경)</td><td>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td></tr>
<tr><td>자료출처</td><td>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상황실 통계)</td></tr>
<tr><td>작성기준일</td><td>2014년 12월 31일</td></tr>
<tr><td>용어설명</td><td>• 양성관리 : 군 간부 중 철도, 발전 등 관련 주무부처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양성)한 군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
* 주무부처 : 철도·전동차는 국토교통부, 가스·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 자원관리 : 군 간부 중 일정자격 보유자를 당해분야 재난 시 지원이 가능토록 관리하는 제도(화물운송, 통신, 의무, 상수도 등)
※ 군 기능인력 관리 분야
<table>
<tr><th>양성관리</th><th>자원관리</th></tr>
<tr><td>① 철도기관사
② 전동차기관사
③ 발전분야
④ 가스분야</td><td>⑤ 화물운송(정부위탁차량, BCT)
⑥ 통신분야
⑦ 의무(의사, 간호사, 간호보조)
⑧ 상수도분야</td></tr>
</table></td></tr>
<tr><td>의미해석</td><td>• 군 기능인력 관리인원은 목표대비 98.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능인력 활용부처 주관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교육이 필요한 양성관리 분야는 98.9%, 국방부 주관으로 인력을 선발·관리하는 자원관리 분야는 97.4% 수준임.
- 양성관리 : 목표인원 대비 98.9%관리. 특히, 철도, 전동차기관사 및 발전, 가스 분야의 양성 중단으로 감소추세임.
- 자원관리 : 목표인원 대비 97.4%관리. 정부위탁차량(200명) 및 추가지정 운전자, 통신, 의무, 상수도 분야 인원은 일정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BCT운전자를 목표수준(385→500명)으로 증대시키고 있음.</td></tr>
<tr><td>유의점·
기타</td><td>• ’14년 관리현황 급감사유 : 군 기능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기준변경(’14.7.)
○ 목 적 : 군 기능인력을 핵심분야에의 집중을 통해 효율적 관리도모
○ 주요내용 : 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를 14개분야→8개분야로 정리
- 단순지원인력(우편운송, 농수관리 등)으로 편성된 6개분야 15,509명은 기능인력에서 제외
- 관련기관(국토부, 산통부 등)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소요가 있는 8개분야 4,659명에 집중관리</td></tr>
</table>

시 설 분 야

1. 국방 · 군사시설 이전사업 세입 · 세출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과장(02-748-5840), 국특회계결산담당(02-748-5891)

1. 통계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방부 (국직 포함)	육 군	해 군	공 군
2007	235,735	164,348	70,127	85,697	6,493	2,031
2008	294,011	199,924	90,335	91,713	9,597	8,279
2009	675,419	275,498	8,737	246,570	6,960	13,231
2010	654,467	226,922	43,845	131,144	12,595	39,338
2011	537,688	495,411	231,291	65,507	22,590	176,023
2012	278,125	248,262	150,359	55,428	31,003	11,472
2013	169,696	163,849	102,570	38,704	19,470	3,105
2014	153,916	150,830	78,755	58,515	12,719	841

* 이전대상부대의 세출시점은 세입시기와 상이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세입・세출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이전사업의 세입・세출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기관 이전사업 집행실적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 재산의 매수·보상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07년 1월 1일 설치된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근거) • 세입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대금 등(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근거) • 세출 : 국방·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사유·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을 위한 경비 등(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근거)
의미해석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소요재원의 100%를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여 총 세입 내에서 세출 규모가 정해지는 구조이며, 각 군 및 직할부대가 이전소요를 제기하고 승인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완화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과장(02-748-5840), 군사시설보호구역담당(02-748-5845)

1. 통계표

(단위 : 만㎡)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제	58,149	-	21,563	929	21,290	1,281	2,522	4,954	159	2,779	2,672
변경	32,315	-	2,059	-	24,047	19	267	570	624	76	4,653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완화 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도별 보호구역 규제완화 현황을 파악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군사시설보호심의 결과 및 관보고시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통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변경 :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거나 비행안전구역을 완화(4구역 → 5구역)하는 것을 의미함.
의미해석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해제, 변경을 통하여 매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해제된 면적은 5.8억㎡(여의도 면적의 200배)이고, 변경된 면적은 3.2억㎡(여의도 면적의 110배)임. • 2008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적으로 해제, 변경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통합 제정(2008.9월 시행)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범위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통제보호구역 2.4억㎡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군사분계선 남방 25km 이외 지역의 보호구역을 축소하여 제한보호구역 2.1억㎡ 해제

3. 군 주거시설 개선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건설관리과 과장(02-748-5820), 신영담당(02-748-5825)

1. 통계표

구 분	2004까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육군병영생활관(대대)	51	60	131	41	50	111	118	61	43	12	-
해·공군·국직 병영생활관(동)	52	75	159	82	82	122	70	159	85	12	6
GOP/해강안 소초생활관(동)	336	100	81	75	90	275	-	-	-	13	64
군관사(세대)	36,894	3,991	5,611	3,111	2,980	5,440	7,649	748	367	598	1,282
간부숙소(실)	5,647	3,000	3,593	6,054	7,219	11,357	21,769	5,182	8,568	2,024	2,942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주거시설 개선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차별 개선실적을 파악하여,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국직 집행실적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병영생활관 : 병영 내 건축물 중 하나의 건물에 주거기능과 행정기능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하며, 침대형 병영생활관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내무반" 또는 "막사"로 불렸음. • 군관사 : 지휘관, 기혼 장교, 부사관의 가족을 위한 주택 • 간부숙소 : 미혼 간부, 지역적 특성(격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힘든 기혼 별거 간부, 교육 및 파견기간 중의 간부를 위한 숙소
의미해석	• 병영생활관 :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육군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추진된 병영시설 개선사업은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과 군 주거환경의 격차해소,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군 구조개편 계획 조정(해체 또는 존속부대)으로 추가적인 병영생활관 개선 필요 • 군관사 :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노후·협소한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 간부 복무의욕 향상을 도모함. 군 간부 정원변동 및 기존 관사 노후교체 소요 발생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간부숙소 : 비상대비태세 상시유지와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간부 부족시설 확보 및 노후시설 개선. 군 간부 정원변동 및 기존 간부숙소 노후교체 소요 발생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
유의점 ·기타	• 시설공사 특성상 다년차사업(2년 이상)이 대부분으로 당해 연도의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발주/고시기준 적용 • 군관사 및 간부숙소는 '14년 국방통계까지 총 목표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15년 국방통계부터는 실제 보유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 2014년말 기준, 군 관사 68,671세대, 간부숙소 77,355실 보유

4. 국방 시설유지비 추이

작성부서 : 국방부 건설관리과 과장(02-748-5820), 유지보수담당(02-748-5827~9)

1. 통계표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424 (100)	3,834 (100)	4,330 (100)	4,702 (100)	5,733 (100)	5,989 (100)	6,104 (100)	6,909 (100)	7,326 (100)	7,332 (100)
공공요금	2,086 (60.9)	2,291 (59.8)	2,384 (55.1)	2,478 (52.7)	2,614 (45.6)	2,844 (47.5)	3,037 (49.8)	3,578 (51.8)	3,732 (50.9)	3,752 (51.2)
시설유지 관리비	1,338 (39.1)	1,543 (40.2)	1,946 (44.9)	2,224 (47.3)	3,119 (54.4)	3,145 (52.5)	3,067 (50.2)	3,331 (48.2)	3,594 (49.1)	3,580 (48.8)

* 괄호는 시설유지비 중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의 비중을 나타냄.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 시설유지비 추이
작성목적 (배경)	연차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기관 집행실적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공공요금 : 군 임무수행에 사용한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말함. • 시설유지관리 : 시설물이 준공 후에 시간 경과 및 사용, 외부적 충격 등에 의해 노후·파손·변형 등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통해 원래 시설물이 갖는 기능성·사용성·편리성을 유지토록 관리하는 제반활동을 말함.
의미해석	• 시설유지운영을 위해서는 보수비 외의 소모성 비용인 공공요금의 비중이 51.2%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노력이 절실하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의 확대·보급 정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공공요금이 최근증가(매년 4~5%)하고 있으며, '11년, '13년도에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각각 9.4%)하여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시설유지운영비의 증가는 시설물의 현대화 및 수량 증가, 노후시설물의 보수량 증대, 부하기기 증대 등에서 기인함.
유의점 ·기타	• 금액 기준 : 공공요금은 집행액, 시설유지관리비는 '05~'13년(예산액), '14년(집행액)

5.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02-748-5830), 재산정보담당(02-748-5871)

1. 통계표

(단위 :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07,219	702,158	761,300	797,326	820,663
토 지	302,369	501,738	528,556	530,149	531,396
건 물	151,901	138,194	170,823	199,850	220,262
공 작 물	46,785	33,068	31,778	34,382	35,811
입 목 죽	3,485	22,032	22,135	22,197	22,428
증권/무체재산	2,679	7,126	8,008	10,748	10,766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을 파악하여 국유재산 정책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토지 :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 법률적으로는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건물 :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나, 업무, 영업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로 상당한 수명이 있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구조물 •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말하며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저수지, 집수암거, 제방, 용수시설, 석축, 교량, 보 등 구조물 기타의 시설 • 입목죽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수목 • 무체재산 : 유형적 존재를 갖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전화가입권, 전산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의미해석	국방부 보유 국유재산은 지속적인 훈련장 매입 및 병영시설 현대화, 가격 재평가 반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의점 ·기타	'10년 대비 '11년 현황이 대폭 상승한 이유는 5년마다 실시하는 가격 개정(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재산가액을 현실화 하는 것)결과 때문임

6. 군 사용 사·공유지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02-748-5830), 취득·처분담당(02-748-5836)

1. 통계표

□ 연도별 현황

(단위 : 만㎡, 억 원)

구 분	계			사유지			공유지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2011	11,451	6,630	8,473	9,690	4,253	5,465	1,761	2,377	3,008
2012	11,132	6,438	8,239	9,506	4,119	5,293	1,626	2,319	2,946
2013	10,928	6,114	8,027	9,343	4,018	5,166	1,585	2,096	2,861
2014	10,783	6,000	7,888	9,212	3,905	5,043	1,571	2,095	2,845

□ 2014년 지역별 현황

(단위 : 만㎡, 억 원)

구 분		계	지역별 구성비	사유지	공유지
계	필지	10,783	100%	9,212	1,571
	면적	6,000	100%	3,905	2,095
	금액	7,888	100%	5,043	2,845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필지	7,297	67.67%	6,732	565
	면적	4,099	68.32%	2,767	1,332
	금액	6,692	84.84%	4,658	2,034
강원지역	필지	2,095	19.43%	1,446	649
	면적	1,214	20.23%	720	494
	금액	738	6.84%	128	610
영남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상)	필지	647	6.00%	505	142
	면적	226	3.77%	177	49
	금액	144	1.34%	85	59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청)	필지	390	3.62%	246	144
	면적	215	3.58%	58	157
	금액	252	2.34%	132	120
호남지역 (광주, 전라, 제주)	필지	354	3.28%	283	71
	면적	246	4.10%	183	63
	금액	62	0.57%	40	22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사용 사·공유지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공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군 사용 사·공유지 현황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군 사용 사·공유지 : 군에서 적법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의미해석	• (연도별 현황) 군 사용 사·공유지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작전상 불필요한 토지는 반환하고, 계속 사용할 토지는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정리하기 때문임. • (지역별 현황) 권역별로는 약 88%(5,313만㎡) 이상이 수도권 및 강원권에 집중되어 있음.
유의점 ·기타	• (연도별 현황) 2010년 군 사용 사·공유지 현황 전수조사 후, 2011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총 면적이 변동되었기에 2011년도부터 통계를 작성하였음.

7. 국방부 소관 토지매입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02-748-5830), 취득·처분담당(02-748-5836)

1. 통계표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 억 원)

구 분		면 적				금 액
		계	시설부지	훈련장	기타	
2010	계	7,146	2,607	4,019	520	274
	협의매수	5,781 (81%)	2,368	2,962	451	189
	수용	1,365 (19%)	239	1,057	69	84
2011	계	5,903	1,586	4,291	26	199
	협의매수	5,267 (89%)	1,516	3,726	25	191
	수용	636 (11%)	70	565	1	8
2012	계	3,571	1,308	1,885	378	113
	협의매수	3,412 (96%)	1,252	1,827	333	109
	수용	159 (4%)	56	58	45	3
2013	계	4,938	1,422	2,793	723	102
	협의매수	4,745 (96%)	1,363	2,659	723	99
	수용	193 (4%)	59	134	-	3
2014	계	3,475	1,074	1,621	780	66
	협의매수	2,881 (83%)	696	1,448	737	55
	수용	594 (17%)	378	173	43	1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소관 토지매입 현황
작성목적 (배경)	연도별 토지매입 현황을 파악하여 토지매입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시설본부 사업추진 결과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토지매입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의해 국방·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를 보상·취득함으로써, 군 사용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행정재산 취득임. • 협의매수 :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국가, 지자체 등이 토지를 사들이는 것. •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
의미해석	• 2014년도 매입 면적은 3,475천㎡로 전년대비 약 29.6%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매입 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예산의 감소와 함께 임차, 지상권 설정 등 정리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결과임.
유의점 ·기타	• 최근 5년간 현황을 작성한 이유는 매년 토지매입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토지매입 면적과 금액이 달라지고 장기간의 연도별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적기 때문임.

8. 국방부 소관 토지 용도별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02-748-5830), 재산정보담당(02-748-5871)

1. 통계표

(단위 : 만㎡)

용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21,022	123,212	123,905	131,686	136,212
훈련장부지	53,330	53,490	52,496	53,520	53,461
건물부지	27,257	27,400	28,825	28,983	29,353
저장시설부지	11,153	11,148	11,205	11,194	11,280
비행장부지	10,392	10,463	10,724	10,680	10,680
축성부지	5,494	5,827	6,057	12,652	16,550
기타부지	13,396	14,884	14,598	14,657	14,888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소관 토지 용도별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 소관 토지의 용도별 현황을 파악하여 국유재산 정책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훈련장부지 : 각종 군 교육훈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 건물부지 : 행정 및 주거 목적의 시설물이 설치 된 부지 • 저장시설부지 : 탄약 및 연료 등을 저장하기 위한 부지 및 해당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 비행장부지 : 군 비행관련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 축성부지 : 작전 및 기지 방어를 위한 진지 및 벙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 기타부지 : 항만시설부지, 유휴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의미해석	국방부 보유 국유재산은 지속적인 훈련장 매입 및 병영시설 현대화, 가격 재평가 반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의점 ·기타	민간인통제구역 내 일부 철책 부지를 국방부가 관리함에 따라 2013년도에 축성부지가 2배가량 증가하였음.

행 정 지 원 분 야

1. 2014년 형사사건 처리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0),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1. 통계표

(단위 : 건)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합 계			8,038	3,673	241	77	6,269	3,068	1,113	399	415	129
장교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8	4			7	3	1	1		
		항명	0	0								
		군무이탈	6	3			4	2	1		1	1
		군용물범죄	5	2			5	2				
		초병에대한죄	1	1			1	1				
		추행	25	18	2		19	15	4	3		
		기타	21	10			11	8	7	2	3	0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08	30	4		78	26	13	2	13	2
		도교법위반	35	8	3		21	5	6	3	5	0
		도교법, 음주	135	133	6	6	99	99	24	22	6	6
		특가법, 도주	10	7			10	7				
	폭력범죄	형법위반	77	15	7	3	56	11	6		8	1
		폭처법위반	15	5			13	5	2			
	성범죄	형법위반	18	10	1		13	8	1		3	2
		성폭법위반	23	16	4	3	11	8	7	5	1	0
		청소년성보호	3	2			3	2				
		성매매	5	0			3				2	0
	기타형법범	뇌물죄	15	11	13	10	2	1				
		문서, 인장	19	8	8	1	10	7	1			
		성풍속	11	6	2		7	4	2	2		
		살인죄	1	0					1			
		과실치사상	11	8			11	8				
		절도, 강도	28	3	2		23	3			3	0
		사기, 공갈	20	8	1		16	8	2		1	0
		횡령, 배임	24	10	7		16	10	1			
	군사기밀보호법		3	3	3	3						
	국가보안법		0	0								
	기타		97	33	21	3	60	24	8	4	8	2

(단위 : 건)

구 분			입건	기소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준·부사관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21	13			16	11	2	1	3	1
		항명	2	0	1		1					
		군무이탈	60	30			47	23	9	5	4	2
		군용물범죄	27	14			13	7	9	7	5	0
		초병에대한죄	4	2			4	2				
		추행	49	35			33	27	6	4	10	4
		기타	30	15			17	7	9	6	4	2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303	81	4		187	61	67	15	45	5
		도교법위반	97	27	1	1	65	20	24	5	7	1
		도교법, 음주	363	342	8	8	241	231	84	75	30	28
		특가법, 도주	33	25			27	21	4	3	2	1
	폭력범죄	형법위반	272	60	7		182	44	60	13	23	3
		폭처법위반	108	49	3	1	85	43	17	4	3	1
	성범죄	형법위반	41	16	4	1	21	11	11	4	5	0
		성폭법위반	34	20	2		20	13	6	4	6	3
		청소년성보호	15	9			11	9	2		2	0
		성매매	7	0			7					
	기타형법범	뇌물죄	2	1			2	1				
		문서, 인장	20	7	1		15	5	3	1	1	1
		성풍속	7	1			5	1	1		1	0
		살인죄	1	1					1	1		
		과실치사상	23	17			20	16	3	1		
		절도, 강도	119	18	4		82	12	26	4	7	2
		사기, 공갈	71	31	4		46	25	12	2	9	4
		횡령, 배임	24	12	1		14	8	9	4		
	군사기밀보호법		1	1	1	1						
	국가보안법		0	0								
	기타		366	151	19	1	250	133	69	9	28	8

(단위 : 건)

구 분			입건	기소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병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52	28			44	26	7	2	1	0
		항명	9	9			9	9				
		군무이탈	406	160	1	1	372	156	27	1	6	2
		군용물범죄	23	12			13	6	8	6	2	0
		초병에대한죄	134	61			95	53	39	8		
		추행	186	107	3	2	154	92	25	11	4	2
		기타	187	107	1	1	88	52	77	45	21	9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200	68	3		172	61	17	4	8	3
		도교법위반	94	49	1		87	48	5	1	1	0
		도교법, 음주	157	148			138	130	15	14	4	4
		특가법, 도주	24	21			22	20	1		1	1
	폭력범죄	형법위반	884	248	9	2	720	217	131	24	24	5
		폭처법위반	503	266	6	4	418	233	70	23	9	6
	성범죄	형법위반	159	90	1		144	85	10	2	4	3
		성폭법위반	137	93	1	1	121	86	10	4	5	2
		청소년성보호	80	43	1	1	78	42	1			
		성매매	11	5			10	5	1			
	기타형법범	뇌물죄	0	0								
		문서, 인장	38	12	1		31	9	4	3	2	0
		성풍속	6	3			6	3				
		살인죄	2	2			2	2				
		과실치사상	19	7			16	7	3			
		절도, 강도	393	162	3		347	156	28	5	15	1
		사기, 공갈	461	218	6	4	421	201	30	13	4	0
		횡령, 배임	58	25	2	1	50	23	4	1	2	0
	군사기밀보호법		0	0								
	국가보안법		3	3			2	2			1	1
	기타		727	305	4	1	654	289	40	11	29	4

* 병에 상근예비역 포함

(단위 : 건)

구 분			입건	기소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군무원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2	1			2	1				
		항명	0	0								
		군무이탈	3	0			3					
		군용물범죄	3	2			1	1	1	1	1	0
		초병에대한죄	0	0								
		추행	1	1			1	1				
		기타	5	1			5	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32	7	4	1	15	4	10	2	3	0
		도교법위반	16	5	1	1	9	3	2		4	1
		도교법, 음주	34	29	5	4	19	18	8	5	2	2
		특가법, 도주	6	4	2	1	3	3			1	0
	폭력범죄	형법위반	28	6	5		15	5	8	1		
		폭처법위반	7	1			6	1			1	0
	성범죄	형법위반	6	3	3	2	2	1	1			
		성폭법위반	2	1			2	1				
		청소년성보호	2	1	2	1						
		성매매	0	0								
	기타형법범	뇌물죄	5	3	4	3	1					
		문서, 인장	5	1	3				1		1	1
		성풍속	1	1	1	1						
		살인죄	1	0					1			
		과실치사상	1	0					1			
		절도, 강도	7	0	2		4		1			
		사기, 공갈	6	2			4	2			2	0
		횡령, 배임	0	0								
	군사기밀보호법		0	0								
	국가보안법		0	0								
	기타		46	15	18	2	20	13	3		5	0

* 기타(신분) : 후보생, 사관생도, 민간인 등

(단위 : 건)

구 분			입건	기소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기타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0	0								
		항명	0	0								
		군무이탈	1	0			1					
		군용물범죄	5	1			5	1				
		초병에대한죄	4	2			3	1			1	1
		추행	0	0								
		기타	1	1							1	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0	0								
		도교법위반	0	0								
		도교법, 음주	0	0								
		특가법, 도주	1	0			1					
	폭력범죄	형법위반	7	0			7					
		폭처법위반	0	0								
	성범죄	형법위반	0	0								
		성폭법위반	0	0								
		청소년성보호	1	0			1					
		성매매	0	0								
	기타형법범	뇌물죄	0	0								
		문서, 인장	1	0					1			
		성풍속	0	0								
		살인죄	0	0								
		과실치사상	0	0								
		절도, 강도	1	0			1					
		사기, 공갈	5	0			4				1	0
		횡령, 배임	1	0			1					
	군사기밀보호법		3	1	3	1						
	국가보안법		0	0								
	기타		11	0	1		9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2014년도 형사사건 처리현황
작성목적 (배경)	한 해 동안 검찰단과 각군 검찰부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에 대한 입건과 기소 현황으로서, 범죄 예방과 대책 등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부검찰단 / 각 군 검찰부 보고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입건 : 사법기관에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됨. • 기소 : 검찰관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공소 제기) * 군검찰 접수 :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헌병 또는 민간수사기관, 군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접수한 것을 의미함.
의미해석	• '13년에 비해 입건 건수가 31.8% 증가하였음. 국방부와 해군의 입건 수가 다소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육군의 경우 '14년도에는 입대 전 범죄 현황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임('13년 이전에는 입대 전 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 기소 건수 또한 '13년에 비해 44.8% 증가하였는바,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내외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육군의 경우 '14년도 입대 전 범죄 현황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임. • 범죄별로는, 군형법범 중 근무이탈의 경우 근무환경이 비교적 개선되고 처벌이 엄격한 이유로 인해 '13년에 비해 26.3% 감소하였음. • 한편 군형법범 중 추행의 경우 '13년에 비해 142%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 징계로 처벌하던 것을 형사처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2. 2014년 보통군사법원 심판 사건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0),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1. 통계표

□ 범죄별, 신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군 형법범							주요 형법범				
			간첩이적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추행)	기타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합계	합 계	3,298	0	187	50	21	67	182	59	0	19	19	3	13
	장 교	322		3	4	3	3	11	7		6	2		3
	부사관	927		31	11	7	2	34	7		5	5	1	7
	병	1,950		152	34	10	62	136	43		5	8	2	3
	군무원	98			1	1		1	2		3	4		
	민간인/기타	1		1										
국방부	소 계	86	0	1	0	0	0	2	1	0	7	1	0	0
	장 교	28									4			
	부사관	16												
	병	21		1				2	1					
	군무원	21									3	1		
	민간인/기타	0												
육군	소 계	2,672	0	164	46	13	57	128	55	0	4	14	2	13
	장 교	232		2	3	2	2	10	6		1	2		3
	부사관	680		22	9	6	2	27	7		2	3		7
	병(상근예비역 포함)	1,703		140	33	5	53	90	40		1	8	2	3
	군무원	57			1			1	2			1		
	민간인/기타	0												
해군	소 계	395	0	7	3	7	10	47	0	0	8	1	1	0
	장 교	45			1	1	1	1			1			
	부사관	163		6	1	1		4			3	1	1	
	병(상근)	175		1	1	4	9	42			4			
	군무원	12				1								
	민간인/기타	0												
공군	소 계	145	0	15	1	1	0	5	3	0	0	3	0	0
	장 교	17		1					1					
	부사관	68		3	1			3				1		
	병	51		10		1		2	2					
	군무원	8										2		
	민간인/기타	1		1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국가보안법,군기법	부정수표단속법	기타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도주)	정조에관한죄	성폭력위반	상해폭행등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158	204	7	179	759	56	113	108	304	4	286	7	0	493
3	11	5	31	141	7	11	14	10		7	4		36
18	34		76	385	25	21	17	51		42			148
136	155	2	63	193	20	78	76	237	4	236	2		293
1	4		9	40	4	3	1	6		1	1		16
0													
1	5	0	1	32	0	5	3	7	0	6	4	0	10
	2			9			2	3			3		5
	1			11		2	1			1			
1	2			1		1		4		5			3
			1	11		2					1		2
144	173	5	146	555	49	93	87	238	4	246	1	0	435
3	8	3	28	102	7	8	7	6		6			23
12	22		56	266	19	11	10	37		36			126
128	140	2	57	170	19	73	69	190	4	203	1		272
1	3		5	17	4	1	1	5		1			14
11	21	2	25	124	2	10	13	47	0	25	0	0	31
		2	2	24			5			1			6
5	8		17	75	2	8	4	12		3			12
6	12		4	18		2	4	34		21			13
	1		2	7				1					
2	5	0	7	48	5	5	5	12	0	9	2	0	17
	1		1	6		3		1			1		2
1	3		3	33	4		2	2		2			10
1	1		2	4	1	2	3	9		7	1		5
			1	5									

□ 형기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군 형법범							주요 형법범				
			간첩이적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추행)	기타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합계	합 계	3,298	0	187	50	21	67	182	59	0	19	19	3	13
	사 형	1			1									
	무 기	1											1	
	자 유 형	219		35	11	3	6	25	4		3	2	1	
	집행유예	632		98	21	8	42	101	12		5	9		3
	선고유예	193		45	13	4	14	19	10		7	3		
	재 산 형	2,047		5		5	1	29	25		1	5	1	5
	자 격 형	0												
	기 타	205		4	4	1	4	8	8		3			5
국방부	소 계	86	0	1	0	0	0	2	1	0	7	1	0	0
	사 형	0												
	무 기	0												
	자 유 형	3									2			
	집행유예	18		1				2			3	1		
	선고유예	8							1					
	재 산 형	50												
	자 격 형	0												
	기 타	7									2			
육군	소 계	2,672	0	164	46	13	57	128	55	0	4	14	2	13
	사 형	1			1									
	무 기	1											1	
	자 유 형	200		32	11	3	6	25	4		1	2	1	
	집행유예	547		91	20	5	36	84	11		2	6		3
	선고유예	139		40	10	2	11	10	8			3		
	재 산 형	1,600				2		1	25			3		5
	자 격 형	0												
	기 타	184		1	4	1	4	8	7		1			5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국가보안법	부정수표단속법	기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풍속에 관한 죄	교특법 위반	도교법 위반	특가법 (도주)	정조에 관한 죄	성폭력 위반	상해 폭행 등	상해 등 치사	폭처법위반	군기법		
158	204	7	179	759	56	113	108	304	4	286	7	0	493
9	7		4	1	3	18	21	13	4	26	1		22
51	26		1	9	5	32	26	19		110	3		51
7	6	2	1			9	7	10		16	1		19
76	151	2	166	732	46	34	50	230		117			366
15	14	3	7	17	2	20	4	32		17	2		35
1	5	0	1	32	0	5	3	7	0	6	4	0	10
											1		
	2					1				3	3		2
1							2	2					2
	2		1	32		3	1	5		1			5
	1					1				2			1
144	173	5	146	555	49	93	87	238	4	246	1	0	435
7	6		4	1	3	16	17	10	4	25			22
48	21		1	7	5	29	21	14		97			46
6	4		1			7	5	7		10			15
69	130	2	133	531	39	24	41	175		99			321
14	12	3	7	16	2	17	3	32		15	1		31

구 분		합계	군 형법범							주요 형법범				
			간첩이적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추행)	기타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해군	소 계	395	0	7	3	7	10	47	0	0	8	1	1	0
	사 형	0												
	무 기	0												
	자유형	10		2										
	집행유예	46		3		3	6	11				1		
	선고유예	37			3	2	3	8			7			
	재산형	295		2		2	1	28			1		1	
	자격형	0												
	기 타	7												
공군	소 계	145	0	15	1	1	0	5	3	0	0	3	0	0
	사 형	0												
	무 기	0												
	자유형	6		1										
	집행유예	21		3	1			4	1			1		
	선고유예	9		5				1	1					
	재산형	102		3		1						2		
	자격형	0												
	기 타	7		3					1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국가보안법 군기법	부정수표 단속법	기타
절도 강도 의죄	사기 횡령 배임 죄	풍속에 관한죄	교특법 위반	도교법 위반	특가법 (도주)	정조에 관한 죄	성폭력 위반	상해 폭행 등	상해 등 치사	폭처법위반			
11	21	2	25	124	2	10	13	47	0	25	0	0	31
2	1						1	3		1			
3	3			2			5	4		3			2
	2	2				2		1		5			2
5	15		25	121	2	6	6	39		16			25
1				1		2	1						2
2	5	0	7	48	5	5	5	12	0	9	2	0	17
						2	3						
						2		1		7			1
										1	1		
2	4		7	48	5	1	2	11		1			15
	1										1		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2014년도 보통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작성목적 (배경)	한 해 동안 국방부와 각 군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심판한 사건현황으로서, 범죄 예방과 대책 등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부고등군사법원 / 각 군 군사법원 보고)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보통군사법원 : 1심 군사법원 • 민간인/기타(신분별, 범죄별 현황) :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현역 때 범죄가 전역 후 발각되어 처벌한 경우에 해당 • 기타(신분별, 범죄별 현황)(범죄 죄목 맨 끝) : 도박, 사행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방조, 위증 등 • 기타(형기별 현황) : 무죄, 공소기각, 민간법원으로의 이송 등
의미해석	• 보통군사법인이 심판한 사건 수는 2013년에 비해 23.9% 증가하였음(2,662→3,298건). 이 중 부사관은 전년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796→927건), 병사는 31.9% 증가하였음(1,174→1,950건). • 군별로는 2013년에 비해 육군은 27.1% 증가한 반면(2,103→2,672건), 국방부는 9.5% 감소하였음(95→86건). • 신분별・범죄별로는, 병사는 폭력범죄, 부사관은 교통범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형기별로는 군무이탈죄와 성폭력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비중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재산형의 비중이 높은 편임.

3. 2014년 고등군사법원 심판 사건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0),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1. 통계표

□ 신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군형법범							주요형법범				
		간첩이적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추행)	기타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계	381	0	47	13	11	12	28	4	0	9	3	2	0
장 교	57		3	3	1	1	8	1		5	2		
부사관	69		7	2	7		9			2			
병	242		37	8	3	11	11	3				2	
군무원	11									2	1		
민간인/기타	2												

(단위 : 명)

구 분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국가보안법군기법	부정수표단속법	기타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도주)	정조에관한죄	성폭력위반	상해폭행등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계	21	16	3	9	14	3	52	40	25	2	44	7	0	16
장 교		1	3		4	1	9	7	3		1	3		1
부사관	1	4		4	3	1	8	5	4		10			2
병	20	10		4	7		35	27	17	2	33	1		11
군무원		1		1		1		1	1			1		2
민간인/기타												2		

* 기타(형기별 현황) : 무죄, 공소기각, 민간법원으로의 이송, 파기, 환송 등

□ 형기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군형법범							주요 형법범						
		간첩이적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추행)	기타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계	381	0	47	13	11	12	28	4	0	9	3	2	0	21	16
사 형	0														
무 기	0														
자유형	101		28	3	2	3	9	1		2		2		9	4
집행유예	127		11	6	5	7	11	2		4	2			6	4
선고유예	40		4	2	2	2	5	1		3	1				1
재산형	58				1									3	5
자격형	0														
기 타	55		4	2	1		3							3	2

(단위 : 명)

구 분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국가보안법 군기법	부정수표단속법	기타
	풍속에관한죄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도주)	정조에관한죄	성폭력위반	상해폭행등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계	3	9	14	3	52	40	25	2	44	7	0	16
사 형												
무 기												
자유형			2		11	12	2	2	8			1
집행유예		1	2		20	18	4		22			2
선고유예		1	1		3	1	4		2	5		2
재산형	1	5	8	1	6	7	8		6			7
자격형												
기 타	2	2	1	2	12	2	7		6	2		4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2014년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작성목적 (배경)	한 해 동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한 사건현황으로서, 범죄 예방과 대책 등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고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고등군사법원 : 2심(항소심) 군사법원 • 민간인/기타(신분별, 범죄별 현황) :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현역 때 범죄가 전역 후 발각되어 처벌한 경우에 해당
의미해석	• 고등군사법원이 심판한 사건 수는 '13년에 비해 '14년도에는 30.0% 증가하였음(293명 → 381명) • 신분별로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전신분에 걸쳐 다소 증가하였으나, 특히 병사의 범죄가 30% 증가하였음(186명→242명) • 범죄별로는 병사는 성범죄와 폭력범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13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성범죄와 폭력 범죄에 대한 국방부의 엄단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형기별로는 군무이탈죄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비중이, 성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비중이 높은 편임.

4. 2014년 군 교도소 수용자 입·출소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0), 교정관리담당(02-748-6839)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14										
	전년말 수용자	당해년 입소자	출 소 자								연도말 수용자
			소계	형기 종료	사면	집행 면제	가석방	집행 정지	기타	일반교도소 이송	
합계	103	180	181	50	0	0	12	0	62	57	102
장교	5	11	5	0	0	0	0	0	4	1	11
준·부사관	16	32	23	8	0	0	3	0	8	4	25
병	81	135	152	42	0	0	9	0	49	52	64
군무원	1	2	1	0	0	0	0	0	1	0	2

* 병에 상근예비역 포함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군 교도소 수용자 입·출소 현황
작성목적 (배경)	한 해 동안 군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현황으로서, 군 수용자의 교정관리 대책 등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군교도소 보고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전년말 수용자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군수용자 현황 • 당해년 입소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소한 군수용자 • 출소자 : 형기 종료, 사면, 형 집행 면제, 가석방, 형집행정지, 일반교도소 이송 등으로 군교도소 출소 • 가석방 : 군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되어 허가 상신 절차를 통하여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출소 결정 • 기타 : 군 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에서 재판결과 석방(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구속취소, 혐의 없음, 무죄)되어 해당검찰의 석방지휘에 의거 출소한 미결수용자 • 일반교도소 이송자 : 군사법원에서 최종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병수용자와 국방부 수용심사위원회에서 일반 교도소 이송 대상자로 결정된 간부수용자로서, 이송 상신 절차를 통하여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이송이 승인되어 일반교도소로 이감 • 연도 말 수용자 : 전년 말 남은 수용자와 당해 연도 입소자를 합한 수용자에서 출소자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군교도소 수용자 현황
의미해석	• 2013년 대비 장교·준부사관의 수용자는 32.3%(31→21명) 감소했으나, 병사 수용자 수는 32.8%(61→81명) 증가

5. 2014년 징계 처분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0), 징계담당(02-748-6818)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장 교	중징계	파면	0	1	0	0	0	0
		해임	1	6	0	1	0	2
		강등	0	2	0	0	0	0
		정직	35	72	4	10	1	5
	경징계	감봉	123	248	13	13	18	26
		근신	110	192	17	25	20	19
		견책	327	450	34	68	20	22
	징계유예		665	94	18	15	4	5
준사관	중징계	파면	0	0	0	0	0	0
		해임	0	0	0	0	0	0
		강등	0	0	0	0	0	0
		정직	2	7	0	0	1	2
	경징계	감봉	12	15	2	1	5	3
		근신	7	13	3	2	1	5
		견책	18	19	1	3	5	4
	징계유예		30	7	1	1	1	0
부사관	중징계	파면	2	6	0	0	0	0
		해임	13	21	1	1	0	1
		강등	0	1	0	0	0	1
		정직	133	209	11	17	8	16
	경징계	감봉	385	599	49	66	34	40
		근신	412	557	63	99	31	50
		견책	917	1,229	164	230	42	53
	징계유예		1,028	245	38	37	4	3
병	강등		8	25	4	2	1	0
	영창		12,479	13,562	1,270	1,352	182	265
	휴가제한		28,338	33,331	1,170	1,221	219	260
	근신		5,210	5,977	182	192	57	60
군무원	중징계	파면	0	0	0	0	0	0
		해임	1	0	0	0	0	0
		강등	2	1	0	0	0	0
		정직	9	10	1	1	1	2
	경징계	감봉	30	27	4	7	5	4
		근신	0	0	0	0	0	0
		견책	47	74	14	13	14	7
	징계유예		195	0	0	0	0	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2014년 징계처분 현황
작성목적 (배경)	한 해 동안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징계 처분한 현황으로서, 병영문화 개선과 인력관리 대책 등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법무실 보고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이며, 군인의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 경징계 : “감봉·근신·견책”이며, 군인의 경우 같은 계급 2회 경징계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의미해석	• ’13년 대비 ’14년 전체 징계 처분자 수는 16.8% 증가(51,634명 → 60,331명) • ’14년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의 중징계 자 수는 395명이며, 경징계자는 4,183명으로서 경징계 처분 자가 월등히 많음. • ’14년 간부 징계자 4,578명 중에서 부사관 징계자는 3,196명으로서 69.8%를 차지함. • ’13년도 대비 ’14년도의 병사의 영창 건수는 8.9% 증가(13,931명 → 15,179명) • ’14년도 병사의 징계벌목 중 휴가제한이 61.9%로서 비중이 제일 많음.

6. 국가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방송무TF팀 팀장(02-748-6840), 송무계획담당(02-748-6841)

1. 통계표

(단위 : 건, %, 백만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 접수건수	1,057	983	939	1,252	1,339
■ 처리건수	431	309	356	615	578
■ 처리율(%)	41	31	38	49	43
■ 청구액 (백만원)	448,181	451,415	558,503	822,231	822,231
■ 인용액 (백만원)	141,477	44,005	76,268	56,857	56,857

(단위 : 건, %,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 접수건수	1,424	1,532	1,943	2,179	2,045
■ 처리건수	654	759	674	602	956
■ 처리율(%)	46	50	35	28	47
■ 청구액 (백만원)	961,192	892,472	1,485,204	1,580,747	905,766
■ 인용액 (백만원)	131,640	409,806	159,365	29,387	213,747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가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가소송사건의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예산 소요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의 소송통계자료 보고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가소송 :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여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접수건수 : 전년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 연도로 이월된 사건과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사건을 합한 소송사건 수 • 처리건수 : 당해 연도에 판결확정으로 최종 종결된 소송 사건 수 • 청구액 : 위 '건수'에 해당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의 총 청구금액 • 인용액 : 판결 확정으로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판결금액
의미해석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연도별 소송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13년도 과거사 사건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집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증가했음. • 2014년도 과거사 사건의 감소로 전체적인 소송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거사 사건의 다수 확정으로 인용금액은 대폭 증가함.
유의점 ·기타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포함하였음.

7. 국가배상금 신청 · 처리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국방송무TF팀 팀장(02-748-6840), 송무계획담당(02-748-6841)

1. 통계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도별)	신 청		처 리				진행 건수
	건수	금액	계 (건수)	인용		기각 등 건수	
				건수	금액		
2010	382	34,272	284	230	2,287	54	98
2011	538	44,943	253	196	1,460	57	285
2012	631	31,353	413	327	2,867	86	218
2013	438	57,094	248	187	2,182	61	190
2014	739	52,069	544	455	2,223	89	195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가배상금 신청·처리 현황
작성목적 (배경)	배상신청 건수의 변동 추이 분석 및 배상금 예산 책정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각 군 / 배상 통계보고 자료)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국가배상금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국가가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대해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가배상법령 의거) • 신청 건수 : 전년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 년도로 이월된 사건과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사건을 합한 국가배상 신청사건 수 • 처리 건수 계 : 신청사건 중 당해 년도에 처리 완료한 사건 수 • 인용금액 : 인용된 사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국가배상금액 • 기각 등 건수 : 처리된 사건 중, 국가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
의미해석	• 2011년도에 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소음 관련 신청건수가 145건 이나 대량 접수되고, 해당 소송 결과(선고) 후인 2012년도에 배상 신청이 처리됨에 따라, 2012년도 인용금액이 증가되었음. • 2013년은 대부분 사유지 무단점유 관련 배상신청으로 인용건수 감소 하였으나 인용금액이 증가 추세임(현 공시지가 상승 원인). • 2014년의 경우 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소음 관련 신청건수가 305건 (2011년 배상 신청 이후의 손해배상 분)으로 접수 및 처리 건수 크게 증가하였음.
유의점 ·기타	• 국가배상 청구 사안이 소송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배상신청 건수에서 제외되었음.

8. 장병 인권교육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인권담당관(02-748-6830), 인권교육담당(02-748-6834)

1. 통계표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인권업무 종사자교육	합계	308	135	54	47	72	266	114	50	53	49
	인권교관	57	30	12	10	5	47	21	11	11	4
	의료업무	59	-	-	-	59	37	-	-	-	37
	수사업무	47	22	9	8	8	37	16	7	7	7
	교정업무	34	25	4	5	-	33	21	5	6	1
	법무관	37	20	10	7	-	39	20	9	10	-
	상담관	74	38	19	17	-	73	36	18	19	-
사이버 인권교육	기초과정	-	-	-	-	-	1,868	1,718	21	29	100
	심화과정	-	-	-	-	-	989	908	13	14	54
	합계	-	-	-	-	-	879	810	8	15	46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인권업무 종사자교육	합계	268	124	53	42	49	244	126	36	36	46
	인권교관	40	20	10	10	-	37	21	8	4	4
	의료업무	39	-	-	-	39	29	7	2	1	19
	수사업무	39	19	7	7	6	35	17	6	8	4
	교정업무	35	20	7	5	3	26	14	7	3	2
	법무관	32	17	9	6	-	34	22	6	6	-
	상담관	83	48	20	14	1	83	45	7	14	17
사이버 인권교육	합계	6,392	4,892	304	65	1,131	10,127	5,984	3,169	115	859
	기초과정	3,272	2,463	184	30	595	5,391	3,126	1,737	68	460
	심화과정	3,120	2,429	120	35	536	4,736	2,858	1,432	47	399

(단위 : 명)

구 분		2014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인권업무 종사자교육	합계	349	125	40	91	93
	인권교관	60	12	3	5	40
	의료업무	38	8	4	4	22
	수사업무	37	18	5	9	5
	교정업무	14	6	4	4	-
	법무관	44	24	9	11	-
	상담관	85	39	10	21	15
	모니터단	71	18	5	37	11
사이버 인권교육	합계	15,885	11,212	1,700	889	2,084
	기초과정	6,084	4,044	833	350	857
	심화과정	5,001	3,354	666	342	639
	군대와인권	4,800	3,814	201	197	588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장병 인권교육 현황
작성목적(배경)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 - 「군 인권업무 훈령」에 인권교관,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을 규정 - 인권교관은 교육기관 또는 각급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인권교관 양성과정 이수자, 군법무관 등이 해당 -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에는 ①의무병과의 군의장교, 간호장교, 의정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②군사법원법에 의한 검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군 사법 경찰관 ③헌병 병과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업무 종사자 ④각급 부대에서 활동하는 여성고충 상담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 - 군법무관은 장병 인권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교육 대상에 포함 -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인권교육 대상에 포함 • 사이버 인권교육 - 사이버 인권교육은 부사관 이상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휘관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훈령에 규정하고 있음.
의미해석	• 인권업무 종사자 - 국방부는 의료, 수사, 교정 등 인권보호 취약분야의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의료분야 종사자 교육의 경우 기존 국직(의무사령부) 인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13년부터 각 군 의료업무 종사자까지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교육함으로써 군 의료분야 인권의식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 '14년에는 인권모니터단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였음. • 사이버 인권교육 - '11년 7월 사이버 인권교육 개설 이후 원거리, 격오지 부대 간부의 수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강인원을 확대, 전 군 간부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14년 5월부터 군대와 인권과정을 추가로 개설함에 따라 수강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음. * 과정별 1회 수강 가능 인원을 200명('11년) → 500명('12년)으로 확대하고, 각 과정 운영 횟수도 연 5회('11년) → 9회('12년) → 20회('13년)로 확대 * 수료 인원 1,868명('11년)→ 6,392명('12년) → 10,127명('13년) → 15,885명('14년)으로 증가

9. 국방부 행정규제 개혁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02-748-6820), 규제개혁담당(02-748-6824)

1. 통계표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등록규제 현황		14	14	7	9	22	22	16	20	25	23
규제정비현황	폐지	0	0	0	0	0	0	7	0	0	2
	개선	0	6	0	0	1	0	0	0	0	5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행정규제 개혁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 소관 행정규제 개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규제개선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규제정보화 시스템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등록규제 :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것
의미해석	• 2008년에는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7년 보다 2건 증가, 2009년에는 누락 규제 13건 추가 등록으로 증가 • 2011년에 16건으로 감소되었는바, 이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중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맞지 않는 7개 규제를 폐지하고 1개 규제(연구개발 군 시설장비 이용허가)를 신설하였기 때문임. • 2012년에는 20건으로 증가되었는바,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5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정 시 4개의 규제를 신설한 것이 원인임. • 2013년에는 25건으로 5건의 규제가 신설되었는데, 국군포로의 처우개선 및 병영 상담관 제도 신설 등에 따른 것임. • 2014년에는 2건의 규제를 폐지*하여 23건으로 감소하였음. * 등록포로 등 신고의무,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 등록규제는 대부분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로 연도별 정비건수가 많지 않으나, 2014년에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5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음.
유의점 ·기타	• 기존 통계의 자체관리규제 현황은 제외하였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현황에서 제외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유지하던 것으로 통계 현황의 혼란제거 및 대외적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외

10.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민원정책총괄(02-748-6890), 민원정책담당(02-748-6888)

1. 통계표

(단위 : 건)

민원 유형별	처리기간별	2014년					
		접 수		처 리			
		서류 민원	전자 민원	해결	해결불가		
					주장이 사실과 다름	법 제도상 근거 부재 및 상충	법 제도상 수용불가
합 계		7,688	41,347	48,123	115	11	786
확인/증명	3일 이내	4,389	18,940	13,699	2		16
	4~7일			4,048	1		16
	8~30일			5,422	8	2	26
	31일 이상			88			1
인사업무	3일 이내	607	4,666	1,705	2		3
	4~7일			1,115		1	6
	8~30일			2,340	10	2	23
	31일 이상			65	1		
복지업무	3일 이내	189	1,327	469	1		6
	4~7일			298	2		20
	8~30일			650	2		56
	31일 이상			11			1
보건업무	3일 이내	123	1,367	282	3		10
	4~7일			325	3		10
	8~30일			821	4		23
	31일 이상			9			
동원업무	3일 이내	24	2,613	548			
	4~7일			689			2
	8~30일			1,381			6
	31일 이상			11			
군사시설	3일 이내	720	1,082	114			2
	4~7일			203			16
	8~30일			1,084	3	1	318
	31일 이상			51			10

민 원 유형별	처리기간별	2014년					
		접 수		처 리			
		서류 민원	전자 민원	해결	해결불가		
					주장이 사실과 다름	법 제도상 근거 부재 및 상충	법 제도상 수용불가
환경/소음	3일 이내	72	623	66			
	4~7일			177			1
	8~30일			449			1
	31일 이상			1			
사건/사고	3일 이내	297	1,497	227	1		1
	4~7일			306	3	4	4
	8~30일			1,177	16	1	17
	31일 이상			37			
비위/민폐	3일 이내	261	3,737	764	1		5
	4~7일			801	7		14
	8~30일			2,262	15		82
	31일 이상			46	1		
국방군사	3일 이내	272	956	157			1
	4~7일			239	1		4
	8~30일			809	2		10
	31일 이상			5			
군수업무	3일 이내	66	770	136			18
	4~7일			150	1		6
	8~30일			504	9		6
	31일 이상			6			
과거사	3일 이내	105	204	18			3
	4~7일			38			2
	8~30일			137			1
	31일 이상			110			
기타	3일 이내	563	3,565	1,171			6
	4~7일			975			12
	8~30일			1,765	16		21
	31일 이상			162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민원 접수건수 및 처리내역 등을 파악하여 민원행정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내역)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민원유형** : 개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정형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접수부서에서 정하는 민원분류로서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음. - 확인/증명 : 상훈확인, 의무기록, 병적증명 발급 등 - 인사업무 : 채용 및 모병선발, 경력/기록변경 요구 등 - 복지업무 : 장병복지, 군인연금, 퇴직금 및 급여 등 - 보건업무 : 장병 보건정책, 의료지원, 전공상 심의 등 - 동원업무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연기/보류, 동원계획/관리 등 - 군사시설 : 국유재산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대 및 시설물 이전 등 - 환경/소음 : 환경오염 및 훼손, 각종 소음피해 등 - 사건/사고 : 사망사고, 폭행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등 - 비위/민폐 : 납품/공사 비위, 사생활 문란, 군사훈련 피해 등 - 국방군사 : 전력증강, 군사보안, 교육훈련 등 - 군수업무 : 군수 운영/관리, 국방 재난관리 등 - 과거사 : 국군포로, 특수임무수행, 삼청교육 등 - 기타 : 친절불친절, 비영리법인설립신청 등 • **해결불가** : 민원처리 결과 "민원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법 제도상 근거부재 및 상충, 법 제도상 수용 불가" 3가지 경우를 해결 불가한 민원사무로 분류
의미해석	• 정보통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전자민원의 비중이 큼. (서류민원 신청율 15.7%, 전자민원 신청율 84.3%) • 민원접수유형은 확인증명>인사업무>비위민폐>동원업무>군사시설>사건사고>복지업무>보건업무>국방군사>군수업무>환경소음>과거사 순임 보건업무, 군수업무, 비위민폐, 동원업무 등의 경우는 전자민원이 대부분이며, 군사시설, 과거사의 경우 다른 민원에 비해 서류민원 비중이 높음. • 군사시설 민원은 군 작전상,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해결률이 낮은 편임.
유의점 ·기타	• 2014년 12월말 처리완료 민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로 처리중인 민원은 미포함 되었음.

11. 국방민원 처리기간 준수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민원정책총괄(02-748-6890), 민원정책담당(02-748-6888)

1. 통계표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접수 민원 수		47,616	49,637
처리현황	법정 처리기간 준수 건수 (준수율)	47,558 (99.9%)	49,607 (99.9%)
	법정 처리기간 초과 건수 (초과율)	58 (0.1%)	30 (0.1%)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민원 처리기간 준수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민원의 처리기간 준수현황을 파악하여 민원행정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내역)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처리기간 : 접수된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라 법정처리기간 설정
의미해석	• '13~'14년 국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9.9%로 동일하나, '14년 처리기간 초과건수는 30건으로 '13년 대비 28건(48.3%↓) 감소함. • '14년 접수 민원 수는 '13년 대비 2,021건 증가하였고, '14년 처리기간 초과건수 30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감소
유의점 ·기타	• 민원접수 건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한 민원기준임.

12. 국방관련 집회 · 시위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민원정책총괄(02-748-6890),
인터넷민원담당(02-748-6897)

1. 통계표

(단위 : 회, 명, %)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94 (100)	6,252 (100)	178 (100)	5,194 (100)	266 (100)	3,004 (100)	294 (100)	2,396 (100)	440 (100)	2,503 (100)
시설공사	7 (7.4)	2,224 (35.6)	25 (14.0)	393 (7.6)	43 (16.1)	1,047 (34.9)	12 (4.1)	307 (12.8)	12 (2.7)	125 (5.0)
인사복지	6 (6.4)	150 (2.4)	111 (62.4)	318 (6.1)	144 (54.1)	160 (5.3)	210 (71.4)	906 (37.8)	299 (68.0)	362 (14.5)
사건/사고	19 (20.2)	401 (6.4)	-	-	1 (0.4)	250 (8.3)	2 (0.7)	4 (0.2)	26 (5.9)	244 (9.7)
전력정책	61 (64.9)	3,462 (55.4)	41 (23.0)	4,482 (86.3)	64 (24.1)	1,414 (47.1)	46 (15.6)	1,048 (43.7)	49 (11.1)	1,348 (53.9)
국군포로	-	-	-	-	13 (4.9)	132 (4.4)	10 (3.4)	33 (1.4)	46 (10.5)	323 (12.9)
기 타	1 (1.1)	15 (0.2)	1 (0.6)	1 (0.0)	1 (0.4)	1 (0.0)	14 (4.8)	98 (4.1)	8 (1.8)	101 (4.0)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관련 집회·시위 현황
작성목적 (배경)	국방관련 집회·시위 현황 파악으로 국방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참고자료 : 용산경찰서 집회·시위 신고내역)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집회·시위 분야별 항목 : 집회시위 내용에 따라 시설공사, 인사복지, 사건/사고 등 해당하는 업무분야로 구분.
의미해석	• 2014년도 집회시위는 총 440회, 2,503명이 참여하였음. • 2014년 집회시위는 인사 복지 분야가 68%로 가장 많은 건수이며, 다음으로 전력정책 11.1% 이어서 국군포로 10.5%임. • 2011년부터 시위가 급증한 인사 복지 분야의 '14년 시위 건수는 전체 시위횟수의 68%에 해당하지만, 시위 참여인원 기준으로는 연인원의 14.5%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부분 1인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임.

13.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

작성부서 :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02-748-6910), 청렴정책담당(02-748-6915)

1. 통계표

(단위 : 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합청렴도	8.93	9.01	9.21	8.15	8.98	8.40	8.52	7.83	7.12	7.52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
작성목적 (배경)	국방부 소속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매년 청렴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다음연도 청렴정책의 환류 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개
자료출처	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작성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종합청렴도 : 공사계약, 내자구매, 복지기금 관리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과 내부직원·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국방부의 청렴지수(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의미해석	• 종합청렴도는 일반국민, 내부직원,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 •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대체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있음.
유의점 ·기타	• 국방관련 비리사건 현황 *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 비리(2009년), 급식 납품 비리(2011년), 함바 비리(2013년), 세월호 및 방산비리(2014년)

14. 전사망 민원접수 현황

작성부서 :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 과장(02-748-1991), 민원담당(02-748-1993)

1. 통계표

(단위 : 건)

사망 연도	신분	사망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52	68	112	66	110
50년대	소 계		21	34	36	13	9
	장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1	0	0	0
		변사	3	2	0	0	0
		일반사 등	2	0	2	0	0
	부사관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2	1	0	0	1
		변사	1	2	4	2	1
		일반사 등	3	2	1	1	1
	병	자해사망	2	0	3	1	0
		병사	2	4	2	6	1
		변사	5	10	6	0	3
		일반사 등	1	11	6	1	0
	기타 (비군인) (노무자) (군무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1	0	0
		일반사 등	0	1	11	2	2

(단위 : 건)

사망연도	신분	사망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60년대	소 계		8	7	9	8	8
	장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1	0	0	0	0
		일반사 등	0	1	0	0	0
	부사관	자해사망	0	0	1	0	1
		병사	0	0	0	0	0
		변사	1	2	1	0	0
		일반사 등	0	1	0	0	0
	병	자해사망	2	1	4	1	4
		병사	2	1	1	4	0
		변사	2	0	1	3	2
		일반사 등	0	0	1	0	1
	기타 (비군인) (노무자) (군무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1	0	0	0

(단위 : 건)

사망연도	신분	사망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70년대	소 계		2	7	10	5	13
	장교	자해사망	0	0	0	0	1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1	0	0	0
	부사관	자해사망	0	0	2	1	1
		병사	0	0	0	0	0
		변사	1	2	1	1	0
		일반사 등	0	0	0	0	0
	병	자해사망	0	2	5	2	9
		병사	0	1	1	0	0
		변사	1	1	1	1	2
		일반사 등	0	0	0	0	0
	기타 (비군인) (노무자) (군무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0

(단위 : 건)

사망연도	신분	사망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80년대	소 계		3	2	6	7	7
	장교	자해사망	0	0	0	1	1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0
	부사관	자해사망	0	1	1	1	0
		병사	0	0	0	0	0
		변사	1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0
	병	자해사망	0	0	2	4	5
		병사	0	0	0	0	0
		변사	1	0	3	1	1
		일반사 등	1	1	0	0	0
	기타 (비군인) (노무자) (군무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0

(단위 : 건)

사망연도	신분	사망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90년대	소 계		3	4	19	8	8
	장교	자해사망	1	1	17	6	1
		병사	0	0	0	0	0
		변사	1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0
	부사관	자해사망	1	0	1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1
		일반사 등	0	1	0	0	0
	병	자해사망	0	2	1	2	5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1
		일반사 등	0	0	0	0	0
	기타 (비군인) (노무자) (군무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0

(단위 : 건)

사망연도	신분	사망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00년 이후	소 계		15	14	32	25	65
	장교	자해사망	1	3	4	2	5
		병사	0	0	0	0	0
		변사	3	0	1	0	1
		일반사 등	0	2	0	1	0
	부사관	자해사망	0	0	3	8	4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1
		일반사 등	0	1	1	0	0
	병	자해사망	0	8	23	13	46
		병사	6	0	0	0	0
		변사	1	0	0	0	1
		일반사 등	4	0	0	1	4
	기타 (비군인) (노무자) (군무원)	자해사망	0	0	0	0	0
		병사	0	0	0	0	0
		변사	0	0	0	0	0
		일반사 등	0	0	0	0	3

2. 통계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통계명	전사망 민원접수 현황
작성목적 (배경)	전공사상자처리훈령 개정에 따른 민원접수 추이를 확인하는 등 전사망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
자료출처	국민신문고
작성기준일	1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전공사상자처리훈령 :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령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처리가 가능토록 범위가 확대되었음. • 미인수 영현 : 군내 사망사고 발생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유골 / 시신으로 현재 군내 영현시설에 보관중임. • 자해사망 :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자 • 병사 :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자 • 변사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일반사망 : 기타 공무상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한 자
의미해석	• 2012. 7. 1부 훈령개정에 따라 자해사망자도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되자 민원이 증가 추세였다가, 2013년도는 훈령의 재개정 움직임에 따라 관망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미인수 영현처리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민원이 대폭 증가하였음.